

발간등록번호

11-1721000-000807-01

혁신정책 / 2023-005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혁신제도 구축 및 협업과제 발굴 최종보고서

2024. 2.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혁신제도 구축 및
협업과제 발굴」(연구개발 기간 : 2023.2.11 ~ 2024.2.10) 과제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 2. 10.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인)

연구책임자 : 이충현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권명화 연구위원

김성진 연구위원

박석중 연구위원

오서연 연구위원

류주혜 전문관리원

김민철 위촉연구원

임성진 위촉연구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OC0305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2023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혁신제도 구축 및 협업과제 발굴									
	영문	Improvement of RIS and regulations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6th comprehensive plan for regional R&D promotion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229-82-01678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110271-0004210					
연구책임자	성명	이충현		직위		부연구위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502		휴대전화		010-2015-8657				
		전자우편	chlee@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11271088				
연구개발기간	2023. 02. 11 - 2024. 02. 10 (12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00,000							200,000			200,00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이충현		직위		부연구위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502		휴대전화		010-2015-8657				
		전자우편	chlee@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11271088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4 년 2 월 10 일

연구책임자: 이 충 현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정 병 선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 요약 서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OC0305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2023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혁신제도 구축 및 협업과제 발굴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3. 2. 11 ~ 2024. 2. 10 (12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200,000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0,000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및 정책과제 추진 방안 마련·실행						
	전체 내용	○ 중앙부처의 지역R&D사업 투자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지역주도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의 강화 ○ 지자체가 추진을 희망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활성화						

연구개발성과	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발의 ②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11개 지역) 추진 및 지역별 2025년도 신규사업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총 4개 상정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추진을 위한 근거법 마련에 기여 ○ 지자체별 특장점에 기반한 신규R&D사업 제안 컨설팅을 통한 지역의 기획역량 및 연구역량 제고 ○ 지자체별 과학기술혁신자원의 분석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과학기술투자분야 등을 도출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예산 투입 의사결정에 기여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1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건수	과학적 성과			사회적 성과									기타
	논문 게재	학술 회의 발표	보고서 원문	법령 변경	정책 활용	안건 상정	제도 개선	다른 연구에 활용	국제 협력	(정책) 홍보	포상 ·수상	1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제6차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지방R&D정책		지방R&D예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지역 R&D 기획역량			
영문핵심어 (5개 이내)	The 6th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R&D			Regional R&D Policy		Regional R&D Budget		Regional S&T Innovation Plan		Planning Capability for Regional R&D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5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실효성 검증 및 추가 조항 발굴	7
	제1절 필요성 및 기본방향	9
	제2절 국내·외 지역과학기술 유관 법령 검토	10
	제3절 작업반 구성·운영 및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21
	제4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초안	24
제3장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부처-지자체 협업과제 추진)	29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해외 지역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33
	제3절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핵심신규사업 기획 컨설팅	39
제4장	지역연구개발사업 기준 및 지역성 평가 방안 제안	51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역낙후도 평가지표	54
	제3절 지역연구개발사업 기준 및 사업 분석	57
	제4절 지역연구개발사업 설정 체크리스트 및 성과지표(안)	71
	참고문헌	78
	붙 임	81
	[별첨]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국회 발의 본)	83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은 소멸위기에 직면
 -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생산인구가 급감하면서 경제,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
 - * 국내 인구가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감소 상태('23년 12월기준, KOSIS)
 - 특히 지역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

- 심각해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
 - 최근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산업·경제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산업·경제 경쟁력으로 직결
 - AI·차세대 통신 등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 기술 혁신과 이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경제 발전의 중요 요소
 - * 디지털바이오(AI·Data+바이오), 이차전지(전기·전자+화학+소재), 첨단로봇(기계+ICT) 등
 -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과학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정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
 - 우리나라도 첨단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 중
 -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22.12),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 「글로벌 R&D 추진전략」('23.11) 등
 -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확보뿐 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정책을 적극 추진 중

-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 부각
 - 국내외 지역은 협력에 기반한 지역 주도 정책·전략의 수립과 이행으로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지역의 보유 자원 및 환경 분석을 토대로 지역 주도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협상을 통한 지원을 시도

- 첨단기술 및 주력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에 지역 산학연관이 결집함으로써 지역에 신산업 발전가능성을 이식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메가시티를 구성하여 효율성 및 임계규모 확보를 위해 노력

○ 우리나라도 초광역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지방자치법 제12장)이 조성되었으며, 지역 주도로 초광역 협력 논의가 활발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이행

○ 경제·사회환경 변화 및 정책기조*를 반영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수립, 본격 추진

* 국정과제 80번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제6차 종합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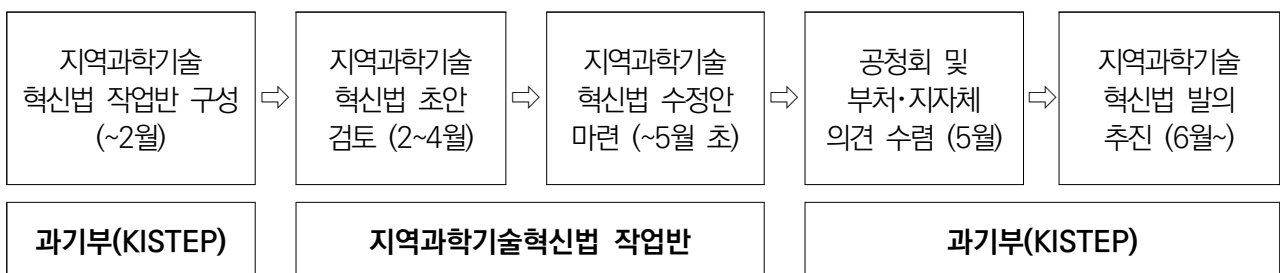
1) 연구의 목표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및 정책과제 추진 방안 마련·실행
 - 중앙부처의 지역R&D사업 투자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지역주도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의 강화
 - 지자체가 추진을 희망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활성화

2) 연구의 내용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의 실효성 검증 및 추가 조항 발굴
 - 지역혁신주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여 의견 수렴을 통한 기구축 조항의 실효성 검증, 타 법령과의 상충 검토 및 신규 조항 발굴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초안 완성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법안 발의 추진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 제정 초안 마련 및 의견 청취

〈 추진일정(안) 〉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중점사업 제안 컨설팅
 - 지역별 현황 분석에 기반한 지자체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수립을 추진
 - 지역 의견 수렴에 따른 수립지침에 기반하여 지자체 및 연구개발지원단 주도로 지역별 환경 및 역량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별 전략 및 사업을 기획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제안한 지역별 핵심 신규사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완성도 제고

- 지자체별 혁신계획 및 신규사업을 소관부처 및 자문위원회가 검토·조정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에서 심의·의결
 -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컨설팅 지원 및 개선방향 제안 등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 활동을 지원
-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산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 지역R&D, 기술 전문가로 구성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관련 주요 추진 경과 〉

구분	회의명	개최일자
수립방향 의견수렴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방향 설정 간담회	'23.3.23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검토회의	'23.6.23
1차 검토 및 컨설팅	지역별 혁신계획 현황 분석 결과 공유회의	'23.8.30
	지역별 혁신계획 컨설팅	'23.9.15, 9.25
1차 결과 공유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중간 공유회	'23.11.9
지역별 신규사업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연계 신규사업 컨설팅	'23.11.20~22
	지역별 2025년도 중점 신규사업 검토·조정 회의	'23.11.27
부처-지자체 협업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24.1.22

□ 지역R&D사업 기준 및 지역성 평가 방안 제안

- 지역R&D사업 기준 정립을 통한 대상 사업(일반, 군특) 검토 체크리스트 및 목록(안) 구축
 - 기존 군특 R&D사업에 대한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여 現지역R&D사업의 적절성 검토
 - 지역연구개발사업 기준 및 성과지표 등을 활용한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 방향성 제안
 - 국가R&D사업 지역성* 관련 성과지표 조사 및 제안
- * 지역 간 격차해소(형평성), 지역별 잠재 역량 증진(효율성), 지역 간 연계·협력 촉진(상호성), 정책효과의 지역성, 재정 대응성·협치성 등
- 지역연구개발사업 사업 기준 및 평가방안(안)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의 2023년도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1)

- 종합계획 내 정책과제별 유관 사업의 추진실적('23) 및 정책방향('24) 종합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또는 서면심의 예정('24 초)

1) 해당 내용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24.3 예상) 후 별도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함



제 2 장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실효성 검증 및 추가 조항 발굴



제 2 장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실효성 검증 및 추가 조항 발굴

제1절 필요성 및 기본방향

□ 현행 법률의 한계 및 법 제정 필요성

- 현행 법률*은 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원칙, 일부사항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추진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규정
 -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 이로 인해 지역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일관된 원칙 및 체계가 미비
 - ⇒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자생적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필요
-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법 제정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주도-정부 지원 형태의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제도화
 - 특히,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책임성 강화

□ 제정 기본방향

- (추진체계) 지역 고유의 특화된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주도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
- (혁신주체) 지역 혁신을 이끌 거점 연구기관·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의 연구역량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생태계) 연구개발 혁신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안정적 연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현

〈 기본방향 〉

- ◇ 지역 주도로 지역의 자율적인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 구축
- ◇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지역 고유의 특화된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 ◇ 연구개발 혁신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 안정적 연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도모

제2절 국내·외 지역과학기술 유관 법령 검토

1 국내 관련 법 현황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및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이 제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 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이하 생략)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하여 규정
- 정부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지방의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역혁신’의 용어를 규정함에 있어 ‘지역혁신’의 요소로서 과학기술을 명시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제시

제2조(정의)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④ ~ ⑱ 생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추진할 때 과학기술 진흥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도록 규정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서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5. 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추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 ⑤ (생략)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제11조에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 7. (생략)
 -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 13. (생략)
- ② ~ ⑤ (생략)

- 지역의 산업인력 양성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산업부장관이 해당 양성된 인력에 대한 기업 등의 공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⑤ (생략)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 10. (생략)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

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이하 “중소기업 기술인력”이라 한다) 양성과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2. 산·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3.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시설·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공급 사업
 4.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공급 사업**
 5. ~ 8. (생략)
 - ② ~ ③ (생략)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 ①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2. ~ 7. (생략)
 8.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 및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 14. (생략)
 - ③ ~ ⑦ (생략)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 8. (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 6. (생략)
- ② ~ ④ (생략)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 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 5. (생략)
- ④ (생략)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관련 진흥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은 과학기술진흥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과학기술위원회로 대표되는 회의체를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 과학기술 관련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전담기관 현황 〉

지역	관련 조례	위원회 명칭	위원 수	개최 현황 (’22년 기준)
서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4차 산업혁명위원회	16명	1회
부산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18명	1회
대구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13명	1회
인천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명	1회
광주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13명	2회
대전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	20명	1회
울산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15명	1회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15명	2회
경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20명	2회
강원	강원도 과학기술진흥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	17명	3회
충북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21명	3회
충남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20명	2회
전북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	30명	2회
전남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16명	1회
경북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20명	1회
경남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14명	2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14명	1회

□ 검토 결과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서 지역과학기술의 일반원칙 및 진흥을 위한 선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주도 지역과학기술 정책·사업 추진 근거법으로 구체성 부족
 -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로 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시책 추진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세부사항 등의 사항이 부족

- 지자체별 과학기술진흥조례의 제정이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바,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일반법으로써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정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이 이루어진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

2 해외 관련 법 현황

□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

-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및 첨단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하여 반도체 분야의 제조 시설 투자, R&D 및 인력 개발 등에 약 53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투자하고 관련 세액 공제를 제공
- 6개 중점전략*을 설정하고 특히 지역경제발전 및 혁신 지원을 통해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유도
 - * 1) 반도체 제조지원, 2)국가 안보 보호 및 동맹국, 파트너국과의 협력, 3)일자리 및 인력 파이프라인 창출, 4)혁신에 대한 투자, 5)지역 경제 발전 및 혁신지원, 6)무선 혁신 및 보안 지원
-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테크 허브 프로그램, 2억 달러의 재경쟁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NSF 지역혁신 엔진 프로그램 시작

〈 「반도체 및 과학법」 중 지역혁신 분야 〉

Division B. Research and Innovation(첨단기술 및 기초과학 R&D)	
Title VI. Miscellaneous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전략 및 경제안보 과학·연구·혁신 전략 작성 •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기술 및 혁신 허브, 낙후지역 재경쟁 시범프로그램(이상 Sec. 10621), 지역 청정에너지 혁신 프로그램(Sec. 10621) 시행 • 양자 통신,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 범부처 워킹그룹 운영 및 핵융합 등 핵물리 연구와 인프라 확충, 탄소저감 및 에너지 효율 제고(반도체, 철강)

주)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최종보고서 에서 발췌

- (지역혁신엔진) 국립과학재단(NSF) 기술혁신협력국(TIP)의 주력 이니셔티브로 유형1(사전준비)와 유형2(설립단계)으로 구성
 - 핵심목표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상용화 R&D 투자 수준 강화,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포용적 경제성장 입증 등을 설정
 - NSF는 '23년 예산안에 2억 달러를 요청, 이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65억 달러 투자 예정
 - 유형1: 최대 2년간 최대 1백만 달러를 지원 / 유형2: 최소 5년간 유지 후 평가에 따라 추가로 5년 갱신 가능, 10년간 최대 1억 6천만 달러를 지원 예정

○ (지역기술혁신허브) 상무부(DOC) 추진 신설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기술 전략 및 발전 계획과 숙련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 활동*의 이행 추진

- * 인력개발 활동, 비즈니스 및 기업가 개발 활동, 기술 개발 및 성숙화 활동, 기반시설 관련 활동 등의 이행으로 구성
- 핵심목표: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과 파트너십 구축, 이를 통한 지역혁신 이니셔티브 추진 및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지원
- 상무부는 향후 5년간 전략 개발 보조금 5천만 달러, 전략 이행 보조금 99.5억 달러 등 1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중국 과학기술진보법(21.12)

○ 중국은 1993년 7월 2일 제정된 과학기술진보법에 지역 과학기술혁신의 장을 추가하여 2021년 12월 개정

- 고효율, 협력, 개방 중심의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개정된 과학기술진보법이 시행되어 국가 혁신체계 구축 및 정비에 대한 원칙적 지도 의견*과 구체적 조치 제시

* 입법 취지 정비, 기초연구 강화,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국가 혁신체계 완비, 핵심기술 난관 돌파 추진, 지역 혁신 구도 최적화, 과학기술 개방협력 확대

- 금번 개정으로 ‘지역과학기술 혁신(7장)’이 추가되어 중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유관 부서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기업이 공정경쟁에 참여하고 실시하도록 장려

< 「과학기술진보법」 중 지역혁신 분야 >

제 7장 지역 과학기술 혁신

- (71조)국가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 공간 분포를 총괄하며, 중앙과학기술 자원과 지방 발전 수요의 긴 말한 연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 (72조)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혁신발전을 추진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연구와 응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73조)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유관부서가 제정하는 산업발전 관련 과학기술계획에는 산업발전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발전의 수요에 부합하고 시장 응용 전망에 대한 명확성을 갖춘 프로젝트는 기업이 과학기술 연구 개발기구·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지방 주요 과학기술계획의 시행은 국가 과학기술주요 과제 안배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74조)국무원은 수요에 근거하여 국가 첨단기술산업공급개발구,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등 과학기술원구의 설립을 비준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원구 건설과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고, 특색과 장점을 형성하여 집결과 시범을 선도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 (75조)국가는 조건을 갖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국가 발전 전략과 지역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주요 과학기술 혁신 기반과 플랫폼을 구축하며 혁신 창업 주체를 육성하고 지역 과학기술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 국가는 조건을 갖춘 지방과학기술혁신센터와 종합과학센터가 선도 정신을 발휘하고, 혁신·개혁을 심화하고, 전세계 과학기술 협력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 7장 지역 과학기술 혁신

- (76조)국가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협력 메커니즘과 상호 협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 부서가 지역 간 혁신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며, 다양한 종류의 혁신 요소가 합리적 흐름과 효율적 집결을 이루도록 촉진한다.
- (77조)국가 주요 전략 지역은 지역 혁신 플랫폼에 의존하여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인재·기술·자본 등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며, 과학 기기 및 설비·과학기술 기반시설·과학공정과 과학기술정보자원 등의 공개·공유를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지역 전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71조)국가는 지방정부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역 과학기술 혁신 집결 규율을 존중하여 지역 상황에 적합하게 지역 특색을 띠는 과학기술 혁신 전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장려한다.

주)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에서 발췌

- 중국 과기부와 교육부가 미래산업과학기술원 건설 시범사업 승인(22.11)하였으며, 수준 높은 연구형 대학, 지방정부 및 과학기술선도기업과 협동하여 지방 미래산업의 중점방향 제시
 - 대학 우위 학과를 이용하며, 체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여 과학기술 선도 고급인재와 혁신 단체를 육성
 - ‘학과+산업’의 혁신모델을 모색해 성과 확산과 인큐베이팅 전문화 능력을 제고하여 미래 산업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하며, 인재·기술·자금·데이터 등 혁신 요소의 집결을 가속화, 혁신 창업 생태계 개선

□ 검토 결과

- 국가 및 연합차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운영에서 더 나아가, 지역 혁신을 위한 법령을 재정비함으로써 필요성의 강조와 지속가능성을 제고
 -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전략에 바탕한 첨단 기술의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의 기술허브 구축 및 낙후지역 재정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속 추진
 - 중국은 지방정부별 과학기술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주요 신기술에 대해 지역별 대학 설립을 추진, 지방정부 및 핵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
-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고려한 지역별 중장기 과학기술계획의 수립과 지역과학기술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제3절 작업반 구성·운영 및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검토 작업반 구성 및 운영 개요

- (목적)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초안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 법제화가 필요한 추가 정책과제 발굴
- (구성) 법률 전문가, 학·연 및 연지단 관계자, 지역 정책 관련 전문가(총 8인)

성명	소속	직위	분야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정책연구자)
이재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상임감사위원	법
전정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출연연 지역정책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지역산업 및 클러스터
강현서	ETRI 호남권연구센터	센터장	지역 출연연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
노진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지역과학기술전담조직
문형빈	부경대학교 빅데이터융합전공	교수	지역 소재 대학

- (작업방향) 지역 출연(연)·대학 등 주요 현황 분석, 주요 조항*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 추가 정책과제** 발굴 및 조문(안) 마련

* 지역과학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지자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역 대학 핵심기술연구단, 지역거점연구소, 집적단지의 활성화, 지역인재 활용 촉진 등

** (예) 지역 전략·특화 분야의 조정·협업, 인재 및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 지역 과학기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공통문제(디지털 전환 등) 해결 지원 등

- (운영실적) 총 3회(2/2, 2/17, 3/8) 및 간담회 운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조기에 도출함으로써 조문 축조 및 개선사항 구체화를 추진

- 각 회차별 회의 후 작업반 전문가 별 개선사항 및 의견을 개진, KISTEP에서 내용 검토 및 법안 조문에 반영
- 전문가별 분야를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필요시 작업반 전문가 외 전문가들에 설명 및 의견 청취
- 작업반 논의 이후 진행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주요 변경사항 및 시행령 작성 방향 의견 수렴

회차	일자	주요내용	참석자(작업반)
1차	'23.2.2(목)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초안 및 향후 일정 설명	윤종민, 이재훈, 전정철, 홍진기, 강현서, 노민선, 노진수, 문형빈
2차	'23.2.17(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작업반 1차 회의 논의 결과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유 토론 • 지역거점연구소와 지역대학 핵심연구단 역할 및 기능의 차별성 • 연구수행주체의 지역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구체화	윤종민, 전정철, 홍진기, 강현서, 노민선, 노진수, 문형빈
3차	'23.3.8(수)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조문 수정(안) 및 위원별 작업사항 공유, 주요 검토사항* 토의 * 지역거점연구기관 및 지역 대학 핵심연구단 역할·범위, 지역 인재 활용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등, 지역과학기술 거점 단지 구체화 등	윤종민, 전정철, 홍진기, 강현서, 노민선, 문형빈, (조민상)
간담회	'23.12.19(화)	작업반 논의 이후 진행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주요 변경사항 및 시행령 작성 방향 의견 수렴	이재훈, 강현서, 노진수(이상 작업반), 이경미, 이현권, 손종태(이상 자문위), 한응규, 정의영(이상 혁신계획 컨설팅위원), 황경준, 김승근(연지단)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역 공청회 개최

- (목적)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대한 지역 산학연, 지자체 의견수렴 및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례 청취
- (일시/장소) 6.1(목) / 라마다플라자호텔 광주*(5층 대연회장)
- (참석대상)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광주·전남·전북 담당 국(과)장, 호남권 주요 대학·연구기관·산업계 대표 등 20명 내외

구분	성명	소속	직위	기관 유형
1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2	김용승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지자체
3	이성호	전라북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지자체
4	이상연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지자체
5	민정준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	대학
6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부총장	대학
7	조정희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장	대학
8	신용진	한국광기술원	원장	연구기관
9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분원장	연구기관
10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센터장	연구기관
11	이영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센터장	연구기관
12	백윤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센터장	연구기관
13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본부장	연구기관
14	김호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본부장	연구기관
15	이성오	(주)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	지역기업
16	김종민	(주)조인트리	대표	지역기업
17	오영환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본부장	연구개발특구
18	조용철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본부장	연구개발특구
19	신민철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회장)	지역전담기관
20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조문 구조 변화

○ 작업반 회의 및 법률 전문가 자문으로 6장 37조 → 5장 28조 구조로 간소화 및 효율화

-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와 지원정책 관련 조문을 통합하여 정책과 사업 연계가 수월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되, 포함내용을 세분화하여 명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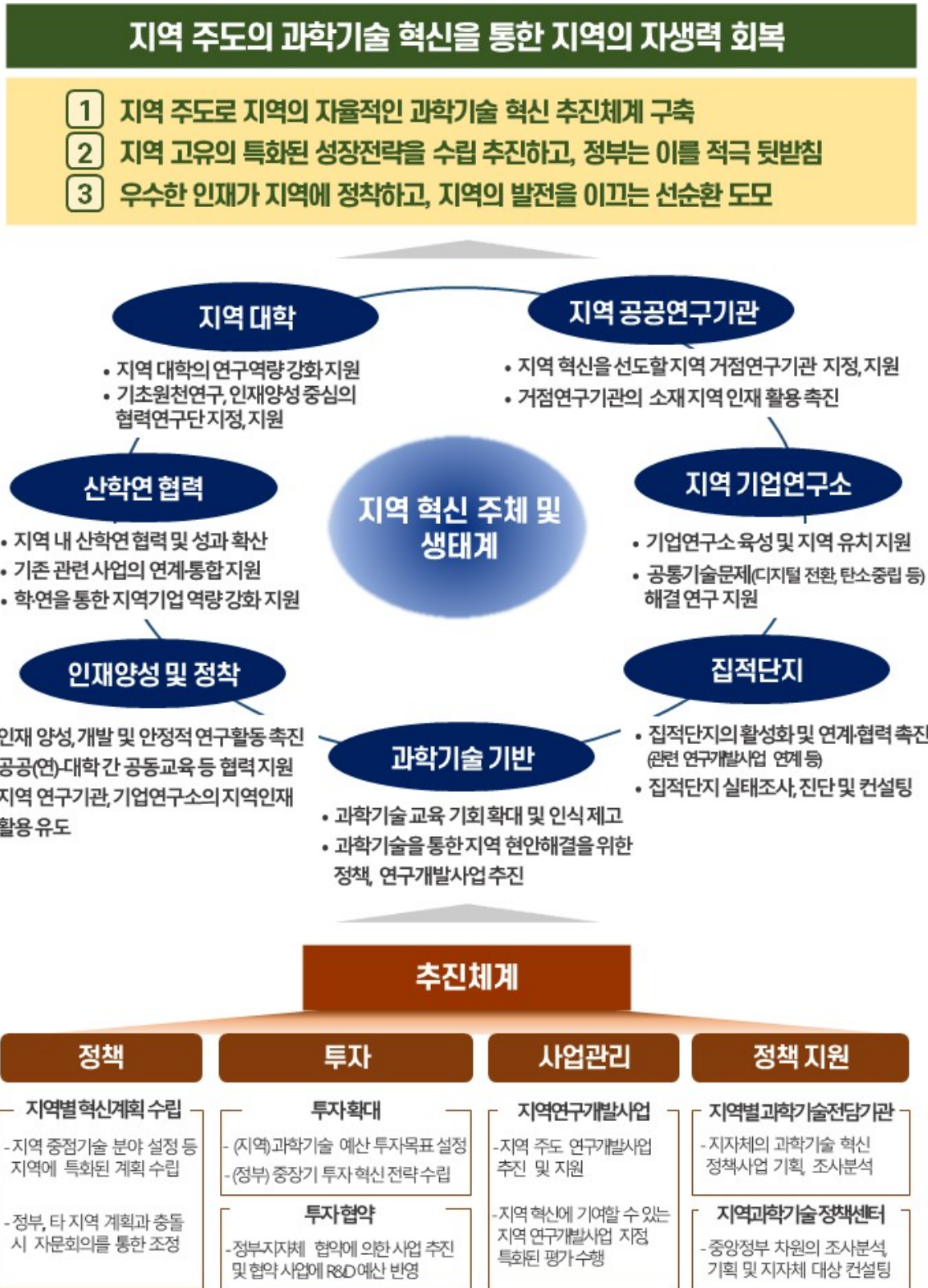
초안 (3월)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 제5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 제6조 지역혁신계획의 조정
• 제7조 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및 지원
• 제8조 지역혁신계획의 성과분석
• 제9조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전략
• 제10조 지역과학기술위원회
• 제11조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 제12조 지역과학기술 지역혁신정책센터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정책
• 제13조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4조 지역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5조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6조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 제17조 지자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육성
• 제18조 지역거점연구기관
• 제19조 지역 대학 핵심기술연구단
• 제20조 출연연 지역조직의 육성
• 제21조 지역기업의 기술문제 해결 지원
• 제22조 기업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 제23조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 제24조 산학연 개방과 협력의 촉진
제5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 제25조 지역과학기술 거점단지의 지정 및 활성화
• 제26조 지역과학기술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 제27조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 제28조 지역연구기관 등의 지역인재 활용 촉진
• 제29조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제30조 지역과학기술 수요 및 통계조사
• 제31조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구축
• 제32조 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 제33조 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
• 제34조 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제6장 보칙 등
• 제3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 벌칙

→

개선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 제5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제6조 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
• 제7조 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 제8조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 제9조 지역과학기술위원회
• 제10조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 제11조 지역과학기술 지역혁신정책센터
• 제12조 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제13조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 제14조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육성 등
• 제15조 지역공공기관의 육성 등
• 제16조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제17조 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 제18조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 제19조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 제20조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 제21조 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 개선 등
• 제22조 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
• 제23조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제24조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 제25조 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제5장 보칙 등
• 제26조 업무의 위탁
•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조 벌칙

제4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주요 내용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체계도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주요 내용

- ◇ 지역 주도로 지역의 자율적인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 구축
- ◇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지역 고유의 특화된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 ◇ 연구개발 혁신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 안정적 연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도모

① 지역 주도, 정부 지원의 추진체계 구축

- (지역별 혁신계획) 지자체가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계획*(5년 단위) 및 실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추진
 - * 지역중점기술 설정 및 투자목표, 자원 확보 전략 등을 포함하여 수립
- (지역과학기술 투자) 정부는 지역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는 연구개발 투자 목표제 도입 등 자체 투자 확대
 -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효율적 투자를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지역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가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역별 전담기관) 지역별로 과학기술 정책·사업 기획,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전담기관 지정·지원
-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역 과학기술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성과평가 시 그 특성·목적을 고려하여 효과성 제고
-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국가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

②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및 혁신주체 간 협력 촉진

- (연구기관) 지역 내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연구인력 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연구기관 지정·지원
 - 거점연구기관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연구 수행 및 소재 지역의 인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 (대학) 거점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초·원천연구, 우수 석·박사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주로 수행하는 지역 대학 협력연구단 지정·지원
- (기업) 지역 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수도권 소재 기업연구소의 지역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확보, 공통 기술문제 해결 등 지원
- (산학연 협력) 거점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융합연구 등 지역 내 산학연 협력·개방 및 지역 내 공공 연구성과의 지역 기업 확산 촉진

③ 지역의 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 (집적단지) 기존 특구, 단지 등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진단, 실태조사, 컨설팅 등 추진
- (인재 양성·정착)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사업* 추진
 - * 지역 산학연 간 교육·인력교류 등 협력 촉진, 소재지 인재 채용 시 지역 연구기관·기업연구소에 인센티브 부여, 석·박사 등 연구인력 대상 안정적 연구 활동 지원 등
 -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 개선
- (지역문제 해결)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이 직면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
- (정보 생산·유통) 근거 기반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활동, 성과 등의 통계·실태조사, 수요조사 추진 및 정보 유통체계 구축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시행령 초안 주요 내용

① (추진체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역과학기술 투자,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

- (지역혁신계획)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지역혁신 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에 제출
 -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에 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 (고려사항) 시·도별 계획 간 중복·충돌 여부, 정부의 지역과학기술 정책과 상충 여부, 지역혁신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재원 확보 가능성
- (지자체의 연구개발 투자) 시·도는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시 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전략, 재정 여건, 과학기술 관련 수요, 지역 산학연의 연구 역량 및 자원 등을 고려

-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전략)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를 규정

* 지역별 중점기술 및 주력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산업 확산, 지역의 자생적 연구 생태계 조성 등

-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

* 지역과학기술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부합성,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증진에 대한 기여도, 지자체의 재원 부담, 지역 산학연의 참여도 등

② (혁신주체)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역대학 협력연구단,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촉진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

- (지역거점연구기관) 과기정통부 장관은 거점연구기관 지정 시 지역중점기술 분야의 연구 경쟁력, 연구인력 보유 여부, 지역 산학연 및 지자체와 협력 정도 등을 고려

- 시·도지사는 중점기술 분야 연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지역인재 활용 촉진 등을 포함한 거점연구기관 지원방안 마련

- (지역대학 협력연구단)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대학 협력연구단 지정 시 지역의 중점기술 및 주요 산업 분야의 연구역량,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보유 여부 등을 고려

-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지역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역할*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에 대해 규정

* 산학연 협력연구,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인력 활용, 시험·평가·인증 등

③ (기반 및 환경)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실태조사, ▲지역과학기술인 양성·활용, ▲지역과학기술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

- (집적단지 실태조사) 입주한 산학연의 경쟁력, 연구인력 수급,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 (인재 양성·활용)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사항*을 규정

* 공동교육과정, 연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연구원 및 교원의 지역 기업 겸직 등

- (통계·정보체계)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통계조사*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수요조사**의 대상, 항목을 규정

*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구개발의 분야별 비중, 과학기술인력 현황 등

** 지역의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현황, 지역 산학연의 보유 기술 및 수요기술 등

- 시·도의 정보유통체계에 지역 내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 연구인력·시설·장비, 기술 이전·실용화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



제 3 장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제 3 장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 추진배경

- (현황) 그 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종합계획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도 제출
 - (지역별 종합계획)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산업, 교육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

〈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시작 시기 〉

기간	1차('00~'04)	2차('05~'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수립 지역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04~'08), 대구	대전, 제주, 울산	경기, 충남	부산, 세종, 광주

- (지역별 시행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과제별로 매년 각 시·도별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을 제출
- (한계)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가 불명확하여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지방종합계획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은 중앙부처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지역의 역할은 집행에 한정
 - 더욱이 지역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지역 간 산업·기술 특화가 어렵고, 지역의 역량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제한적

⇒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종합적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화 분야와 전략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 추진

〈 기존 지역별 계획과의 차별성 〉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혁신계획
범위	지역 과학기술 전반	지역 중점 과학기술 분야 중심
구체성	선언적 의미의 정책 및 사업 현황 제시, 세부이행 방안 미흡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육성할 기술 분야 및 지원계획 제시
연계성	중앙부처 주요 계획들을 정책환경의 요소로 제한적 반영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과 관련성 및 연계방안 명시

□ 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필요
 - 지역의 과학기술 중심 혁신을 위한 지역의 산업, 교육, 연구개발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 지역혁신전략 수립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의 추진전략 1-2-①*에 따라, 지방종합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지역별 역량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화 분야 도출 및 발전전략 수립
 -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체계 정립
 -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별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R&D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집행, 성과관리 체계 확립·운영을 추진
 - 중앙정부는 지역이 수립한 발전전략과 이의 이행을 위한 기획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 중앙정부,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연계체계 〉

구분	중장기 계획(5년 단위)	시행계획(매년)
중앙정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지침)	종합계획 시행계획 (주요내용 정리 및 컨설팅)
	↓	↑
지자체	지자체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계획)	혁신계획 실행계획 (지자체별 추진계획 및 투자전략)

제2절 해외 지역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1 미국 정책 및 사업 현황

□ 지역혁신엔진

-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핵심 중점기술 분야에서 기술이전 촉진과 사업화, 인력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및 과학법의 10388항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운영
- 3개 중점전략*을 설정하여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핵심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연계하여 파급효과 향상,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인력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 촉진
 - * 1)혁신 역량 강화, 2)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 3)포용적인 경제 성장
-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에서의 기반 마련과 역량 고도화의 단계적 접근 시도
 - Type-1: 지역혁신엔진을 구축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탐색·구조화
 - Type-2: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과학·기술분야 성장 및 인력 양성으로 혁신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해당 주제에서 국가적 리더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

〈 「지역혁신엔진」지원 프로그램 〉

	Type-1	Type-2
지원 기간	최대 2년	최대 1년
지원 금액	최대 백만 달러	최대 1억 6천만 달러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주제영역에서 해당지역의 새로운 NSF 엔진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엔진의 구조와 범위를 지정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들의 확고한 파트너십 구축 • 지방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인력양성을 통해 혁신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 지역 혁신 생태계의 성장 단계 동안 해당 주제 영역에서 국가적 리더로 부상하도록 지원

주) NSF Engine 홈페이지(<https://new.nsf.gov/funding/initiatives/regional-innovation-engines>)에서 발췌하여 정리

□ 지역기술허브

-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청은 지역 혁신기관 사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기업의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전략 개발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기 위해 지역기술허브(Tech Hubs)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 기술을 제조, 상용화 부문 등에서 확산 시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3대 주요 전략*을 설정하여 10개의 중점 기술**을 지원

* 1)지역경제 성장 확대 및 기술 혁신 민주화, 2)포용적 경제 성장 추진, 3)속련되고 다양한 인력 및 공급망 구축
 ** 인공지능, 머신러닝, 고성능컴퓨팅, 반도체, 컴퓨터HW 및 SW, 양자정보과학 및 기술, 로봇공학, 재해/재난 예방, 차세대 통신 기술 및 몰입형 기술, 생명공학·의료기술·유전체학, 생체데이터 저장·관리·보안, 첨단에너지 및 산업효율성기술, 고급재료과학

- 지역의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며 자산·자본·R&D·노동·인프라가 집중된, 10년 내에 해당 분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역량이 있는 지역의 허브를 선정

□ **낙후지역 재경쟁 시범프로그램**

-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청은 저성장·저고용 지역에서 포괄적인 다년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경제적 성장을 유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낙후지역 재경쟁 시범프로그램(Distressed Area Re compete Pilot Program)을 운영

- 지역노동시장* 황금연령 고용 격차²⁾가 전국평균에 비해 큰(PAEG 2.5%이상) 지역이거나, 지역노동시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황금연령의 고용 격차가 크고 연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공동체(PAEG 2.5%이상, 연 가구소득 75,000달러 이하) 대상

* 대도시통계지역, 소도시, 통근지역으로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 모든 원주민 지역과 태평양 지역 포함

- 형평성*이 중요한 지표로 설정 되어, 신청자가 낙후 지역 내 지역민에게 혜택을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해야 하며, 선정 과정 중에 지역 사회 참여 및 기여 현황 확인 요청

* ①여성, 흑인,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등 전통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직접적인 혜택 수혜 계획 수립, ②원주민구역, 지속적인 빈곤이 입증 된 농촌지역의 참여로 경제적 번영 기회 제공 필요

□ **국가 청정 수소 전략 및 로드맵**

- 2023년 6월, 미국 에너지부는 수소의 생산·처리·운송·저장 및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청정 수소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

- 3대 전략* 중 하나를 지역 혁신 전략으로 설정하여 지방과학기술 혁신에 비중을 두었으며, 지역혁신을 위한 산업 발굴이 아닌 특정산업 성장을 위하여 지역혁신을 고려한 점에서 의의

* ①전략적이고 영향력이 큰 분야에 집중, ②청정수소 비용절감, ③지역 네트워크 확보

- 지역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지역생산능력연계, 유희인프라분석, 지역최종사용잠재력 등의 기반 자료로 제시하고 권역별 프로그램을 공모하였으며, 지역사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론 발굴을 위해 정보공개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2) PAEG, Prime-Age Employment Gap

□ 스마트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 지원 프로그램

-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장려하며, 스마트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에 투자
- 지역 보존 파트너십(RCPP, 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총 50억 달러를 지원하며 비료에 의한 토양 내 탄소 및 질소를 줄이고, 농업 생산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감축·포집 기술 적용에 지원
- 보존 기술 지원(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해 총 10억 달러를 지원하며, 농·축산업 및 임업 생산자에게 최신 과학기술 및 연구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과 관련 정보 제공
- 농·축산업 및 임업 생산자 대상 기술 지원을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영세한 농·축산업 및 임업 생산자에게 재정교육, 역량강화교육을 비롯한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 차세대 식품·농업 전문가 양성(NEXTGEN)을 통해 2.5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식품·농업 연구 및 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 장학금, 인턴십 등 취업 기회 매칭을 제공

2 EU 정책 및 사업 현황

□ 슬로베니아 SRIP 순환경제

- 지속가능한 관광·식량생산 및 순환경제를 위한 그린딜 정책의 방향성을 구축하고, 전략 설정 및 실행을 위해 2016년 민관클러스터 조직인 전략적 연구혁신 파트너십(Strategic Research and Innovation Partnership, SRIP*)을 구성
 - * 국내외의 연구 협력을 이끌고 첨단제품 및 순환 경제분야의 혁신 서비스 공동개발 중개
- SRIP는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신기술, 친환경 설계, 디지털화 도입 등
- SRIP는 순환경제를 기조로 주정부 입안자,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기관, 혁신 사용자, NGO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연구,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킹 및 협력을 수행
- SRIP는 유럽 Interreg,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며 슬로베니아 정부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유럽 내 혁신주체들과 다양한 협력구조를 구축

□ 오스트리아 포랄베르그(Voralberg) VLOTTE

- EU의 탈탄소화 지침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에너지 자율화 목표를 설정하였고, 2008년 전 기연료를 기반으로 한 e-모빌리티 사업체인 VLOTTE를 설립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문제 극복 노력 선도
- VLOTTE는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
 - *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동수단의 탄소배출을 절감하여 지역 경제 부흥과 환경오염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
- VLOTTE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주체 구성의 외연을 확장하여 실질적인 혁신체계를 구축
 - * 포랄베르그 주 산하 지역공공사업 및 에너지 공급업체(illwerke vkw)가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임대 서비스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비영리 연구기관(카이로스)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력
 - ** 지역 차량공유업체가 대다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여 사용자에게 e-모빌리티의 친숙성을 높였으며, 사용자(지역공무원, 기업체 직원, 민간인 등)가 기술 조정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피드백 제공

□ 북부 네덜란드의 지역혁신체계

- 북부 네덜란드 연합(SSN)은 2013년부터 EUROPE 2020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포괄브라이트 랜드적 성장을 기조로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시도하였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스마트전문화 전략을 수립
- 사회적 문제해결 수행을 목표로 기존에 충분히 구축된 지역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리빙랩을 실제로 적용하여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마련
- 지역 강점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유럽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행하며,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
- 지역혁신의 목표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설정할 수 있고, 혁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한 것이 의의

□ 네덜란드 람뷔르흐의 BrightLand

- 네덜란드 람뷔르흐 지역은 2010년부터 쇠퇴산업인 광업 중심에서 벗어나 네 개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신산업 중심 혁신체계 구축을 시도하였고, DSM이 앵커기업 역할을 하며 클러스터 관련 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

- 네 곳의 캠퍼스가 스마트팜·헬스케어·신소재 및 공정·데이터과학을 담당하여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하여 현재 372개 기업과 1만3398명의 학생, 15,602명의 직원이 네덜란드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
- 화학기업 BASF는 핵심 연구나 주요 사업화 대상이 아닌 경우 직원들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DSM이 운영하는 클러스터에 파견하여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창업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Innovation Voucher를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원하는 혁신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주도형 혁신을 추구하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수직적 가치사슬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수평적 협력을 실행하여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안준모(2021), 혁신도시 브라이트 랜드를 통해 미래도시를 그리다, 2021 도시미래연구센터 콜로키움

3 일본 정책 및 사업 현황

□ 2023 과학기술·혁신 백서

- 2023년 6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이해를 돕고자 **과학기술 혁신진흥**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시책을 담은 2023 과학기술·혁신 백서를 공개
- 1부는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과학기술 혁신’, 2부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소개하며 지방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일본 내 과학기술 혁신 사례를 소개
- (가나가와현) 지역 주도의 독자적 산업·기술 특색을 반영한 과학기술혁신의 사례로 가나가와 현을 제시하며 지역의 과제해결을 통해 생산액 증가·고용창출·의료비 억제 등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가져오고 지역혁신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
* ①550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의 집적 및 거점 정비, ②나노의료혁신센터에 여러 전문가가 모여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
③양자 이노베이션파크를 구축하여 양자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출·집적
- (아오모리현) 지역 특성 및 대학의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과학기술혁신 사례로 아오모리현·히로사키대학의 well-being 지역사회 공동창조거점을 제시하며, 지역의 과제해결을 통해 생산액증가·고용창출·의료비 억제 등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가져오고 지역혁신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
* ①일반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등의 전조 발견·예방법 개발 및 사업화 추진, ②히로사키 대학에서 개발한 기능성소재(아오모리PG)를 이용하여 미용분야 등에 산업 창출

- (이와미자와시)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부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이와미자와시·홋카이도대학의 산학지역 공창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인 고령화로 인한 1차 산업 종사자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혁신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

* ①임산부·영유아의 변, 모유 등을 빅데이터기반 분석을 시행하여 맞춤형 음식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저체중 출생아 감소(2015년 10.4% → 2017년 6.3%) 및 경제적 효과 창출, ②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농기계무인작업·농시간 자율주행·원격조종 등을 통해 작업시간을 40~50% 줄이는 효과 창출

- (아따가타현) 게이오기주쿠대학 첨단생명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한 아따가타현·쓰루오카시·게이오기주쿠대학의 쓰루오카 사이언스파크*를 제시하며, 지역 기여 사례**를 소개

* 연구소 관계자들이 전체 쓰루오카시 인구의 1%에 해당하는 규모

** ①대학발 스타트업인 Spiber주식회사의 성공사례, ②대학에서 현지 고등학생을 방과 후에 연구조수로 채용하거나 연구생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사업 전개

- (고등전문학교) 일본 전역에 분포한 고등전문학교(KOSEN)에 의한 과학기술 혁신 사례 소개*

* ①산학관 등과 공동·수탁연구, 기술상담 및 지역주민 대상 공개강좌를 통해 지역활성화 및 혁신에 공헌 ②지자체, 반도체 관련 기업,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반도체 인재육성에 기여

□ 후쿠시마 신에너지 사회구상 가속화플랜

- 2023년 7월, 일본 경제 산업성은 후쿠시마의 에너지 산업 전반의 혁신 거점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후쿠시마 신에너지 사회구상 가속화 플랜을 발표

* 제로카본 와인사업/재생에너지 100%공업단지 구축/어항에서의 파력발전

** 암모니아-수소 혼소 기술 실증/수소를 이용한 제조업 열수요 대체/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 수송

- (혁신거점 연계) ①FREA(연구 및 사업화 지원)과 ②FH2R(수소 실증 및 생산), ③F-REI(글로벌네트워크 추진 및 인력양성)와 같은 혁신 거점*의 역할

* ①FREA:Fukushima Renewable Energy Institute, AIST, ②FH2R:Fukushima Hydrogen Energy Research Field, ③F-REI:Fukushima Institute for Research, Education and Innovation

- (인프라)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송배전 사업 실시 및 수소수입환경 정비를 위한 탄소중립포트(CNP) 형성

- (네트워크) 수소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EMS) 구축, 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용 정보 게시 및 환경평가데이터베이스(EADAS)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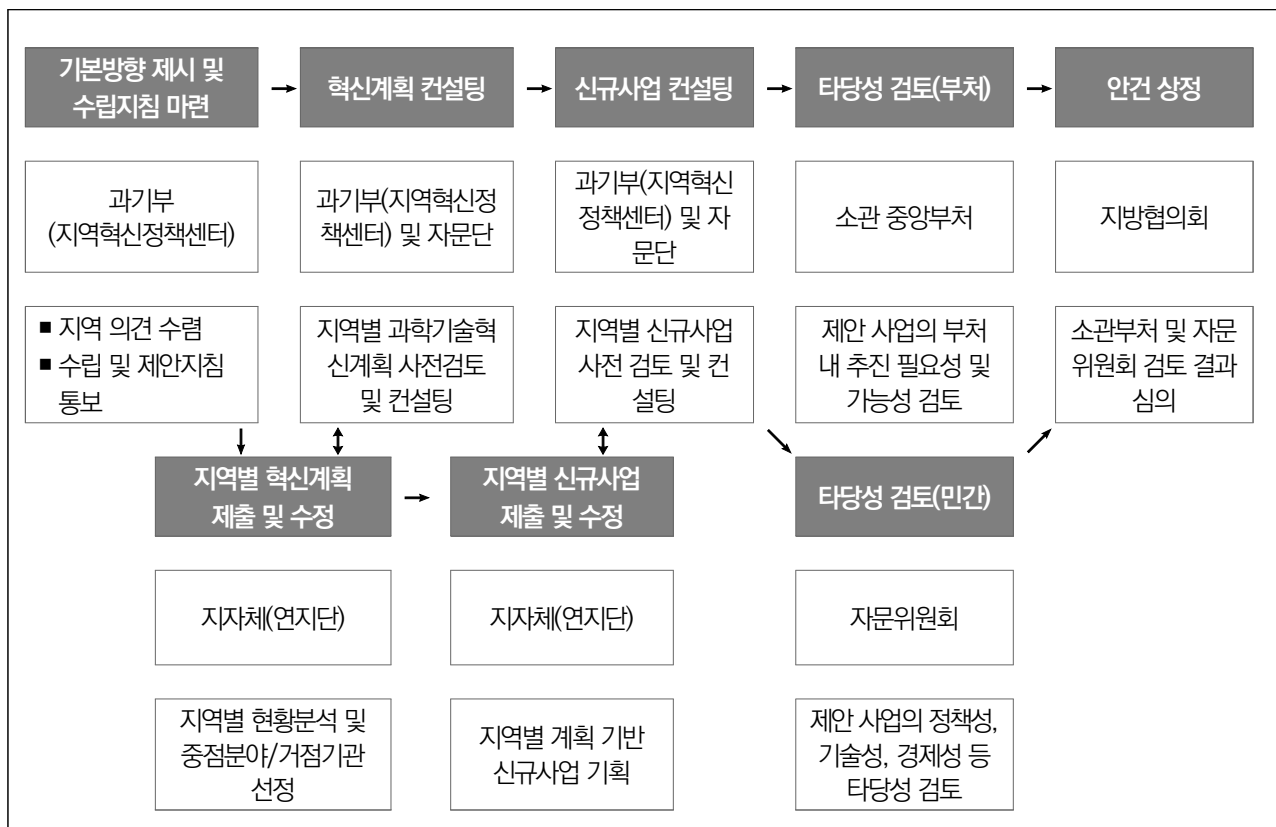
제3절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핵심신규사업 기획 컨설팅

1 주요 절차 및 추진내용

□ 주요 수립 절차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아래 그림에 따라 지침마련-계획 수립 및 컨설팅-사업 기획의 절차로 추진

- 지역 의견 수렴에 따른 수립지침에 기반하여 지자체 및 연구개발지원단 주도로 지역별 환경 및 역량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별 전략 및 사업을 기획
 - 지역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부 및 KISTEP 지역혁신정책센터가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원
-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산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 지역R&D, 기술 전문가로 구성
- 최종적으로 지자체별 혁신계획 및 신규사업을 소관부처 및 자문위원회가 검토·조정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에서 심의·의결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핵심신규사업 기획 절차 〉

□ 주요 수립 절차별 세부 추진내용 및 실적

○ 기본방향 제시 및 지역 의견 수렴 후 수립지침 마련

- 지역별 중점과학기술분야 분석 및 거점연구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향 마련('23.3月~5月)
-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의견 수렴 및 수립지침 개선('23.6月)
- 17개 시·도 대상 과학기술혁신계획 수요조사 및 지역* 잠정
*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10개 광역지자체 추진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지침('23.7.12) 및 지역별 중점 신규사업 제안지침 통보('23.8.18)

○ 지역별 제출 초안에 대한 사전검토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자원 현황 분석 및 중점 과학기술분야 도출 결과 수합(~'23.8.21)
- 제출 자료에 대한 지역혁신정책센터 및 컨설팅 자문단의 사전 검토 수행('23.8.21~8.29)
- 지자체 및 연구개발지원단 대상 사전 검토 결과의 공유('23.8.30)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개선 및 대면 컨설팅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자원 현황 분석 및 중점 과학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도출 수정본 수합(~'23.9.12)
- 수정본에 대한 지역혁신정책센터 및 컨설팅 자문단의 대면 컨설팅 수행('23.9.15, 9.25)* 및 결과의 지자체 통보('23.10.10)
* 1차(9/15) : 광주, 경북, 경남, 대전 / 2차(9/25) : 충북, 충남, 부산, 전북, 전남, 강원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자원 현황 분석 및 중점 과학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도출 2차 수정본 수합(~'23.11.1)

○ 지역별 2025년도 중점신규사업 제안 수합 및 결과 공유, 컨설팅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기반 2025년도 중점신규사업 제안 수합*(~'23.10.24) 및 지역 혁신정책센터 사전검토(~'23.10.30)
* 제안지침 상 10월 15일이 기한이었으나,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10월 24일까지 수합하였으며, 15개 광역지자체(서울, 인천 제외)에서 제출
-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기반 2025년도 중점신규사업 제안 수정본 수합(~'23.11.6)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중점신규사업 관련 간담회 및 공유회 개최('23.11.9)
 - ※ 간담회 : 자문위원회 위원, 컨설팅 자문단 위원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 공유회 : 지역별 지자체 실무자 및 연지단 담당자 대상
- 지역별 2025년도 중점신규사업에 대한 지역혁신정책센터 및 컨설팅 자문단 대면 컨설팅* 수행('23.11.20~22)
 - * 11/20(월) : 부산, 충남, 광주, 경남, 세종 / 11/21(화) : 대전, 강원, 전남, 울산, 제주
 - 11/22(수) : 경기, 충북, 전북, 대구, 경북

○ 지역별 2025년도 중점신규사업 재수정본 수합 및 부처/자문위 검토

- 대면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재수정본 수합(~'23.11.28)
- 수정 사업제안에 대한 소관 부처 및 자문위원회 검토 및 조정(~'23.12.5)
- 최종 후보사업 도출 결과를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상정, 보고 및 의결('24.1.22)
 - ※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본 계획(전략 및 과제 도출) 수립은 차년도 6월까지 완료 예정(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전략과의 협의)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관련 주요 추진 경과 〉

구분	회의명	개최일자
수립방향 의견수렴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방향 설정 간담회	'23.3.23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검토회의	'23.6.23
⇒ 산출물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지침		
1차 검토 및 컨설팅	지역별 혁신계획 현황 분석 결과 공유회의	'23.8.30
	지역별 혁신계획 컨설팅	'23.9.15, 9.25
⇒ 산출물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검토 및 컨설팅 결과		
1차 결과 공유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중간 공유회	'23.11.9
⇒ 산출물 : ①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컨설팅 추진현황 ② 지역별 중점과학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도출 결과		
지역별 신규사업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연계 신규사업 컨설팅	'23.11.20~22
	지역별 2025년도 중점 신규사업 검토·조정 회의	'23.11.27
⇒ 산출물 : ① 지역별 2025년도 중점 신규사업 검토 및 컨설팅 결과 ② 지역별 신규사업 제안 검토 결과		
혁신계획 및 지역별 신규사업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24.1.22

2 주요 수행 결과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지침

- (지역 역량 및 환경 분석) 지자체가 지역 산업 구조, 과학기술 자원, 관련 R&D사업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이 강점 또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산업 분야 도출
 - ※ 정책 환경 및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지자체 정책방향 간 연계성 분석도 병행
 - (산업 현황 분석) 산업별 비중 및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주력산업별 주요기업 현황,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와 정합성 등 분석
 - (과학기술 역량 분석)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현황 및 성과, 지역별 주요 R&D사업 현황 및 중점 투자방향 등을 분석
- (중점 과학기술 분야) 기술·산업 분석 결과, 지자체의 정책방향, 국가적 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집중 육성할 분야 설정(2개 이내)
 - * (주요지표) 집적도, 특화도, 성장률, 지역기업 연계성(이상 정량), 정책 부합성, 사업 연계성, 지속 가능성, 미래 활용 가능성(이상 정성)
 -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기술 분야 육성 필요성과 육성 전략을 제시
 - 수도권 및 타 지역 대비 성장 가능성과 비교우위, 타 지역 분야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 등을 반드시 제시
 - * 유사한 분야의 경우 세부 분야 차별화 방안 내지 타 지역과 협력 전략 고려
- (거점연구기관)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 중에서 선정(2개 이내)
 - * 출연(연)(분원 포함), 4대 과기원 등 특정(연), 전문(연), 지자체 자체 연구기관 등
 - 기관의 역량, 자원 및 주요 연구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거점연구기관의 연구가 지역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시
 - * 중점 과학기술 분야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 및 유망 산업
- (전략 및 과제) 중점 과학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기관 육성과 관련된 전략 및 과제를 우선 도출
 - 혁신계획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까지 고려
 - * (예) 중점 과학기술 분야 인재양성,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방안, 거점연구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방안,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 역량 강화 등
- (핵심사업 제안) 지역별 혁신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핵심 사업 추진계획을 혁신계획에 함께 제시

- 중점기술분야 및 거점연구기관과 신규 핵심사업 간 연계성 제시*

* (예) 사업 수행에 있어 거점연구기관의 역할, 중점기술분야와 일치 여부 및 관련성 등

□ 지역별 혁신계획 검토 및 컨설팅

- (목적) 지역별 역량 분석, 중점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기관 선정 등에 대한 자문단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보완 의견 제시

※ 혁신계획 수립을 희망한 10개 지자체(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를 대상으로 추진

〈 지역별 혁신계획 컨설팅 자문단 위원 명단 〉

성명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구분	소속 및 직위
이경미	산	(주)성균관생활건강 고문	정의영	산	아인혁신컨설팅 대표
이현권	학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한응규	연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경훈	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장	김혜경	연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찬영	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복	학	경상국립대학교교수	백철우	학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손중태	학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양시영	학	전북대학교 교수

- (주요 내용) 역량 분석 및 중점기술 분야, 거점연구기관 선정(안) 검토·조정

- 역량 분석과 중점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기관 간 정합성 검토
- 중점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기관 선정의 적절성 및 선정 근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 의견 제시
- 중점기술 분야의 지역 간 중복성 검토 및 필요 시 차별화, 조정 제안

〈 지역별 현황분석 검토 및 컨설팅 항목 〉

분류	주요 항목
지역 역량 및 환경 분석	중앙-지자체 간 지역혁신정책 관련성
	지역 산업구조 변화 진단과 지역과학기술정책과의 적합성 및 향후 추진방향
	지역 소재한 혁신주체(산학연) 현황 및 성과 진단과 중점과학기술분야 집중 분석
중점과학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 기관 설정	중점과학기술분야(대분류 기준 2개 이하)의 적절성 및 정량·정성 지표 해석의 명확성
	중점과학기술분야 및 소분류 기술의 비교우위 및 성장성 진단 및 제시
	중점과학기술분야 및 소분류 기술에 대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 및 연계·협력
	역량 및 환경분석 부분과 SWOT 분석의 논리적 연계를 통한 거점연구기관 선정
	선정된 거점연구기관의 중점과학기술분야 연구 수행 지속가능성(인력, 관련 사업 등)
	거점연구기관에서의 수행될 연구의 지역 내 산업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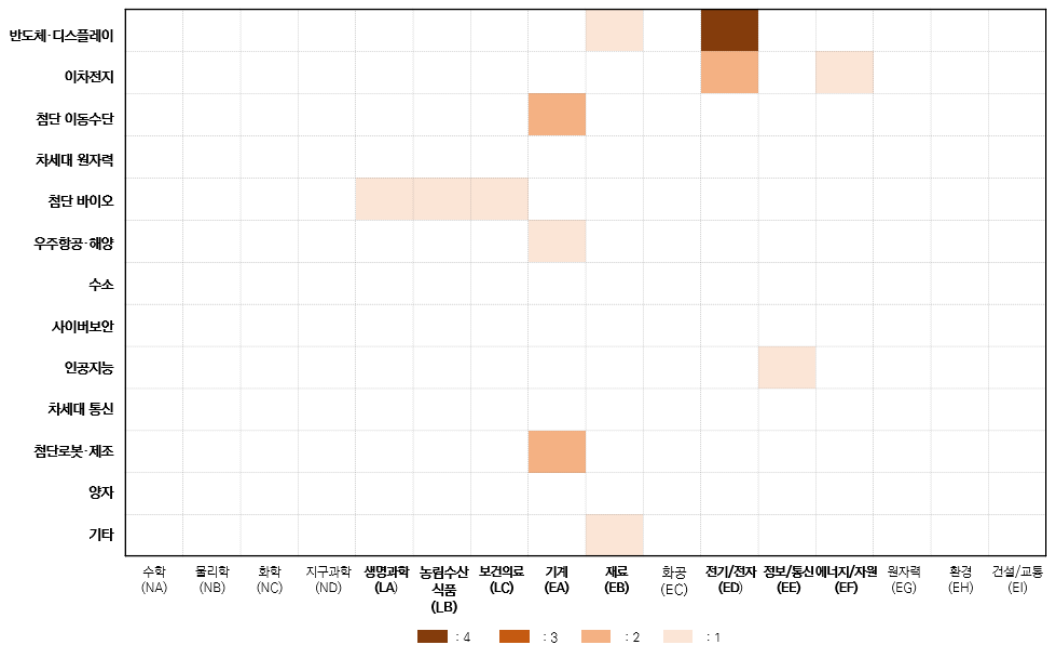
○ (주요 결과) 지역별 중점과학기술 분야를 선정·제출하였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분야별 단일 거점연구기관을 선정·제출

* 대구의 경우 컨설팅이 별도 수행되어 아래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지역별 제출내용 및 컨설팅 의견 요약 〉

지역	주요내용	
부산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 (거점연구기관) 생기(연) 동남본부, 기계(연) 부산센터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분야의 타당성 보완이 필요 - 조선·해양, 기계 등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추진 요망 - 이차전지의 경우 세부 분야의 조정 및 선정 근거의 보완 필요 • 거점연구기관 선정 근거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역량 분석을 보완하여 제시할 필요
광주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인공지능, 메디헬스케어 • (거점연구기관) 인공지능융합사업단, 전남대병원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 기술인 인공지능을 활용할 지역 주요 산업 분야의 구체화·명확화 • 메디헬스케어의 경우 타 지역 대비 경쟁력에 대한 자료 보완 및 협력방안 제시가 필요 • 인공지능융합사업단, 전남대병원이 거점연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선정 근거 및 역량 분석과 광주의 주요 연구기관, 대학에 대한 분석이 필요
대전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국방반도체, 첨단바이오(우주 연계) • (거점연구기관) ETRI, 생명(연)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설정된 국방반도체, 우주바이오 분야는 융합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임 • 우주바이오는 현재 기술 수준 및 기업 수요 등을 감안, 지원 필요성 및 지자체 추진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
강원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기능성바이오소재, 세라믹재료 • (거점연구기관) KIST 강릉분원, 생기(연) 강원본부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분석 및 중점기술 분야 도출이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 • 전략적으로 미래 유망분야(디지털 헬스케어 등)로 확장을 고민해볼 수 있음 - 세라믹의 경우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등에 활용방안 및 필요한 R&D에 대한 구체화로 완성도 제고
충북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정보통신 • (거점연구기관) 충북대학교(반도체, 이차전지), 청주대학교(정보통신)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를 포함하여 중점기술 분야 선정의 타당성을 추가 검토하고, 2개 분야를 확정할 것을 제안 - 중점기술 분야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 - 보건 의료 분야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점기술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거점연구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선정 근거 보완 및 충북의 주요 연구기관, 대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충남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차세대 항공교통(AAM) • (거점연구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항공교통은 충남의 기존 주력산업을 고려할 때 육성 가능성 및 선정 근거를 보완하여 제시할 필요 - 충남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 분석 및 AAM 관련 세부 현황 분석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차세대 항공교통은 범위가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범위 확대 및 중점기술 분야를 2개로 설정 고려 • 자동차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를 고려할 때, 거점연구기관으로 선정한 근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
전북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농림수산식품, 재료(복합재료 등), 기계(차체 지능화 등), 생명과학(바이오화학소재), 에너지(태양광/풍력 및 수소) 중 선택 • (거점연구기관) 미정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분석은 잘 되어 있으나 중점기술 분야 확정이 필요 - 지침에 따른 적합성 점수, 성장 잠재력 및 R&D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점기술 확정 • 핵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한 것은 좋으나, 계획의 전략성, 정합성 확보 요망

지역	주요내용	
전남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전력IT 등), 농림수산물(농업기계, 수산 등) • (거점연구기관) 동신대학교, 전남 농업기술원 및 해양수산과학원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정합성, 지역 현황 분석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보임 • 중점기술 분야의 선정 근거 및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이며, 중점기술 분야의 재검토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거점연구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선정 근거 및 역량 분석과 전남의 주요 대학, 연구기관의 현황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북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 (거점연구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 포항공대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모두 선정 근거 및 역량 분석이 제시되었으나, 2개 분야로 확정하는 것을 제안 - 반도체, 이차전지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차별화 및 협력방안을 고민할 필요 - 2개 분야 확정 시 타 지역 대비 경쟁력, 해당 분야의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경남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술) 우주·항공, 방위산업 • (거점연구기관) 재료(연), 전기(연)
	컨설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의 강점은 인정되나, 중점기술 선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을 보완 요망 - 우주·항공, 방위산업의 세부 분야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세부 분야의 집중을 제안 • 재료(연), 전기(연)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 연구를 지역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된 산학연 협력체계를 제시할 것을 제안



〈 지역별 중점과학기술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매칭 결과(안) 〉

□ 지역별 중점신규사업 검토 및 컨설팅 주요 결과

○ (목적) 17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화 산업·기술을 반영하여 제안한 2025년도 중점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 의견 제안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지역별 2025년도 중점 신규사업 제안 지침(8.18)에 따라 제출(~10.18)된 각 1개 신규R&D사업

○ (주요 내용) 지역별 신규사업(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방향 제시

- 자문위원회의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활용, 컨설팅 자문단 수정·보완 의견 제시

〈 지역별 중점신규사업 컨설팅 주요 항목 〉

구분	주요 항목
정책성	〈사업 성격〉 • 기 구축된 지역의 시설·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시설·장비 등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을 지양하고 있는가?)
	〈사업 추진 필요성〉 • 해당 지역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이슈의 해결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술성	〈성과지표 설정 근거〉 • 사업의 목적, 내용 및 활동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구성과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사업 수행 가능성〉 • 제시된 수행주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추진체계 구성을 통해 수행역량을 확보하였는가?
	〈사업목표-내역 사업 간 연계성〉 • 내역사업이 사업목표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경제성	〈사업 규모〉 • 사업 추진을 위해 제시된 사업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며, 적절한 수준인가?
	〈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 • 지자체 참여내용, 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지방비 협약서 등의 참여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내용)를 제시하였는가?
혁신계획 부합성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부합성〉 •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중점과학기술분야에 해당하며 거점연구기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경우 고려

○ (결과) 15개 지역에서 제안한 중점신규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결과 제시 완료

※ 해당 결과는 지자체별 공개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상세내용 미제시

□ 지역별 중점과학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도출 및 신규사업 제안 검토 결과

- 지역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중점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기관(안) 선정, 제3회 지방과학기술 진흥협의회 보고 안건으로 상정

〈 지역별 중점기술 분야, 거점연구기관 선정 결과 및 추진방향 〉

지역	선정 결과, 근거 및 추진방향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전기추진선박, 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군이 인접하여 적용이 유리하며, 재사용배터리 실증 생태계 조성 등 이차전지 분야를 적극 육성 중 - (동아대학교) 이차전지 소재·분석·제조 분야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대학 컨소시엄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거점 역할 수행 ⇒ 동아대학교는 R&D, 해양기자재연구원은 선박용 배터리 시험·인증 거점기관으로 설정하여, 해양 모빌리티용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선정 결과, 근거 및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전력반도체)) 전력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17~),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를 전력반도체 중심으로 특화하여 관련 기업 입주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학교) 동남권 거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선정되었으며, 관련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 ⇒ SiC 반도체 생산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전력반도체 개발·생산 및 인증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 개발, 특화단지 내 기업 유치 등 지속 확대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X)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으로 구축된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대학원 등을 통한 인력양성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RI 호남권연구센터) 호남권 지역산업 기반 ICT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등 지역과 연계한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역량 보유 ⇒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AI 광융합 반도체 등 인공지능을 융합한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 ■ (첨단모빌리티)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 특화산단을 유치하여 첨단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가능하며, 완성차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기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기(연) 서남지역본부) 지역에서 연구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 중 하나이며, 차세대 모빌리티용 자기발전·충전 기술 개발 등 관련 연구를 수행 ⇒ 생기(연), 자동차(연) 등을 활용하여 부품, 금형기업 등의 업종전환 지원 및 미래차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밸류체인기반 조성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비수도권 최대규모의 ICT/SW기업 및 SW연구·지원 인프라 집적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RI 대경센터+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지역 미래산업 기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 융합연구 역량 보유 및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중 ⇒ ABB 핵심기술 기반의 지역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과 B2B 유니콘 기업 및 혁신인재 육성으로 디지털 인재·기업 성장 선순환체계 구축 ■ (헬스케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R&D 특구 등 핵심 인프라 및 우수한 대학·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개발에서 임상·평가·사업화까지 첨단 헬스케어산업 전주기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연구인력·인프라 보유 ⇒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연·병 연계·협력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메디바이오 등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바이오) 다수의 출연연-대학 간 협력이 가능하며, 거점연구기관 중심으로 스피노프 기업이 다수 있는 등 혁신벤처 생태계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연)) 바이오헬스 분야의 우수한 연구 역량 및 국가생명자원 연구자원정보센터 등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벤처·창업도 활성화 ⇒ 첨단 바이오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및 바이오-타 산업 기술 기반 전문 기업 간 협업 활성화 ■ (반도체(국방반도체)) 풍부한 R&D 자원 및 사업화·기술창업 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이전 등을 통한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RI) 반도체 및 반도체와 융합 가능한 IT 분야 연구 역량 보유 ⇒ 국방산업단지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방반도체 활용·확산 극대화 및 기술기반 반도체-방위산업 간 협력 활성화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바이오소재) 풍부한 바이오소재 자원 및 관련 우수 대학, 출연(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 소재 활용 및 가공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 강릉분원) 지역 천연물을 위한 고부가가치 소재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관련한 연구 역량이 우수 ⇒ 첨단바이오 육성과 연계하여 기존 바이오 식품 산업을 다각화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발굴하여 첨단 헬스케어 산업 내 바이오 신소재 적용

지역	선정 결과, 근거 및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라믹제조공정기술) 국내 최대의 광물 매장 및 복합소재 관련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라믹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 - (생기(연) 강원본부) 금속·세라믹 소재 제조 및 가공 R&D를 주력으로 추진 중이며, 세라믹 제조공정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 보유 ⇒ 광물 자원 및 지역의 산업·연구 생태계를 바탕으로 반도체, 이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저장 등 첨단 산업 내 기능성 세라믹 소재 개발 추진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생산과 수출 1위로 국내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오창을 중심으로 앵커기업, 소부장 기업 중심의 생태계 및 연구·시험 인프라 보유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에너지 신소재 발굴 및 에너지·환경 융합소재 등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주요 연구로 수행 중 ⇒ 산학연관 집적화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제조공정 등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글로벌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지역 주력산업으로 전국 2위 규모이며,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소재·설계, 부품, 완제품, 실증의 밸류체인 형성 - (충북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는 등 반도체 분야 연구역량 보유 ⇒ 대기업 중심의 메모리반도체 산업 육성, 소부장 첨단화 지원 및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거점 구축,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산단지 조성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강소특구 등을 통해 주력인 자동차 산업을 차세대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있으며, 현대차 중심으로 AAM 산업 기반 구축이 진행 중 - (자동차연구원) 미래자동차 핵심 설계/개발 기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AAM 분야 연구역량 확보 및 기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 중 ⇒ 자동차연구원, 현대차 등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AAM 핵심부품 평가 기반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 등 추진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농기계, 건설기계 등 모빌리티 분야의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상용차 및 농기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주축산업으로 안착 - (생기(연) 전북분원) 지능형농기계에 특화된 연구그룹을 운영 중이며, 디지털 특수목적기계 산업전환 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으로 연구 역량 보유 ⇒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부품 및 친환경 기술의 기계 산업 적용을 확대하고, 차세대 신기술 육성 및 농·건설기계의 대 규모 실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탄소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탄소 소재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생태계를 보유 -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장비 등의 인프라 보유 및 탄소섬유 개발,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을 중점 R&D로 추진 중 ⇒ 상용화 확대를 위한 모빌리티, 에너지 등에 적용 가능한 범용 기술개발 및 그린전환, 디지털전환과 연계한 탄소복합 소재 응용산업 수요발굴·대응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자원)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관련 특화단지 및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공기업 소재 - (녹색에너지연구원) 신재생에너지 R&D, 에너지+ICT 융합 R&D 등을 주로 추진 중이며, 태양광발전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보유 ⇒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및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을 통한 풍력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 작물재배 조건이 유리하며, 스마트팜혁신밸리 등을 통한 농업의 첨단화 및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추진 중 - (전남 농업기술원) 디지털 농업 선도모델 및 신품종 육성·보급 기술개발을 목표로 시험·연구를 수행 중 ⇒ 지역 소재 공공기관 및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을 연계한 연구거점 구축 및 백신산업특구 등과 연계한 농·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 추진

지역	선정 결과, 근거 및 추진방향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자동화기계) 로봇융합연구원 등 우수한 로봇기술개발 및 지원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해당 분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융합연구원) 육상·해양·농업·제조·서비스용 등 로봇 관련 원천기술 및 실증·시험 센터·장비 등을 보유 ⇒ ICT/SW 기반 활용, 로봇 생산거점 구축, 허브-스포크 실증 생태계 구축 등 시와 로봇 융합을 통한 독창적 산업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반도체 특화단지 및 비메모리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다수 위치하며, 자동차, 부품, 통신, 가전 등 전후방산업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금오공대) 반도체 설계, 공정, 테스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및 최고 수준의 클린룸 보유 ⇒ 반도체특화단지를 핵심 소재·부품 중심으로 구축하고, 메타버스, UAM 및 지역 주력산업 (이차전지, 미래차 등) 연계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방위산업) 국가 방산·항공 관련 핵심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연) 등 거점연구기관의 국방 R&D 추진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생태계 조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기술 육성을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잠수함 전기추진, 안티드론 시스템 기술 개발 등을 ADD 등과 수행 중 ⇒ 거점연구기관-대학·연구소-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바탕으로 방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인증-사업화 체계 구축

○ 소관부처 및 자문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결과 강원, 전북, 부산, 대전에서 제안한 사업을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상정·의결

- 예산 연계 후보사업은 세부기획 보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거친 후 내년도 지방협의회 (3~4월)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연계 사업을 확정 예정

〈 지역별 제안사업별 부처·자문위 검토 결과 〉

지역	사업명	후보사업
부산	친환경 해양모빌리티용 고안전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
대구	뇌연구 빅데이터 기반 뇌융합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
광주	AI-생체소재-세포 융합 첨단 정밀·재생의료치료제 원천기술 개발	-
대전	첨단바이오향약품 기술 고도화 혁신 실증사업	○
울산	에너지 저소모형 폐폴리우레탄 해중합 촉매 및 화학반응 특이성 기반의 비용 절감형 분리·정제 기술 개발	-
세종	정보보호 R&D실증테스트베드 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
경기	초고령 사회 대응 통제비티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	-
강원	헬스 에이징 S.O.S(Smart One-Stop Solution) 사업	○
충북	고안전, 고용량 미래형 이차전지 글로벌 R&D 거점 및 에코시티 생태계 조성	-
충남	유·무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전북	전라북도 미래 특수목적기계 산업전환 핵심기술 개발 및 unREAL기반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전남	원전 등 활용 탄소중립 국가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	-
경북	생활밀착 물리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약자 AIeR(AI를 활용한 로봇 기술 고도화) 기술 개발	-
경남	초경량 고밀도 전기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
제주	해상 에너지 저장/전환/수송 플랫폼 이어도 「E.A.R.D.O」 프로젝트	-



제4장

지역연구개발사업 기준
및 지역성 평가 방안 제안



제 4 장 지역연구개발사업 기준 및 지역성 평가 방안 제안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 추진배경

-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R&D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 및 대상은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
 - 기존 균특회계 R&D사업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R&D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데 한계
 - ⇒ 지역 혁신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에 특화된 평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R&D에 대한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 및 범위는 없으며, 통상 균특회계 R&D를 지역 R&D로 간주
 - ※ '23년 기준 균특회계 R&D사업은 1조 6,276억원(고등교육특별회계 이관사업 포함)
 - 균특회계 R&D 중 일부*는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 중심으로 지역 산업·경제로의 확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지역혁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을 대표, 포괄하는데 한계
 -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등은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일반회계 R&D사업 중에도 지역의 연구역량 제고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 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이 다수 추진 중
 - * 지역혁신 연구센터(RLRC), SW중심대학,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등
- 지역 R&D의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R&D사업에 대한 특화된 성과 평가 및 사업 관리도 제한적
 - (성과평가) 성과지표에 지역 발전에 관한 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 혁신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곤란
 - * 지역 수혜기업의 성장 기여도, 지역 고용 증대,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 등
 - (예타조사) 현재의 사업 유형 및 평가지표로는 지역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역부족
 - ※ 정책적 타당성의 일부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항목 내지 특수평가 항목으로 의무는 아닌 상황
 - ※ 유형별 과학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비중 : 도전·혁신형 - 55~65/20~40/5% 이하, 성장형 - 40~50/20~40/10~40%, 기반조성형 - 40~50/30~50/10~20%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역낙후도 평가지표

□ 국가 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 성과관리의 개념 및 절차

- 정부와 공공부문은 정책 산출물의 시장이 없거나 제한되고, 독점적 공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중요*
- 사업 분석을 통해 자원의 투입, 사업의 집행, 산출 과정, 기대성과 등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제시된 10대 사업 유형*을 참조해 사업 유형을 파악
 - * ①기초연구, ②단기산업기술개발, ③중장기산업기술개발, ④공공기술개발, ⑤지역연구개발, ⑥국방기술개발, ⑦인력양성, ⑧시설장비구축, ⑨성과확산, ⑩국제협력
- 사업유형과 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성·핵심성을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목표치 설정
- 소관 부처, 관리기관, 연구자, 평가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하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 과정

- (개념)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업 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업 활동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설정과정) 사업수행을 통해 생성되는 투입지표·과정지표·산출지표·결과지표를 모두 도출하여 사업의 목적 및 활동과 연관된 각각의 성과지표를 최대한 많이 도출하여 실제 이용 가능한 성과지표 풀(pool)을 충분히 확보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불명확한 지표· 지나치게 일반화된 성과지표 설정은 지양
- 성과지표 설정시 5대 성과분야*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시점(초기-중기-장기), 사업유형에 따른 핵심성과 중심으로 2개 이상이 구성되도록 설정
 - *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

○ 성과지표 도출

- (투입지표) 연구개발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적·인적 자원 등이 해당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물적·인적 자원으로 수치·수식을 도출
 - * 투입된 자원의 종류(예산, 인력, 시간)와 규모(양) 및 투입자원의 지표화 확인

- (과정지표) 진행과정에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일반적으로 사업의 진행 상태와 추진 정도를 점검하여 공정률, 진척도 등이 해당

* 사업의 진행과정을 비롯하여 사업 활동, 총사업비, 전체일정, 현재까지 투자액, 진행된 일정과 이를 지표화하였는지 확인

- (산출지표) 투입과 사업 활동을 거쳐서 생산된 산출물을 확인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과지표 도출의 근간이 되는 지표*로, 연구개발과정에서 산출된 1차적인 성과이지만 사업이 의도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제한적

* 사업 활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 서비스를 확인하여 지표로 개발 여부, 사업 담당자가 투입하는 재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활동과 직접 연관여부, 확인된 재화 서비스의 지표화 여부 등

- (결과지표)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산출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사업으로 인한 효과보다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효과가 더 크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

* 도출된 결과지표의 궁극적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성과달성에 더 영향력이 큰 다른 외부요인의 개입 가능성 확인 여부, 여러 해가 지난 후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완료 사업임에도 결과지표를 도출할 수 있는지, 중간목표를 설정하여 초기·중간·최종 결과지표를 도출하는지 확인

○ 5대 성과분야 중 사회적 성과 부문 ‘지역사회’ 항목

- 사회적 성과 분야의 주요지표로서 지역사회 기여 지표 항목을 통해 과학기술을 이용한 지역혁신 기여도를 평가
- 다른 지표의 경우 설정사례나 측정산식/측정시기/측정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지역관련 지표는 사례나 산식 등의 구체적 제시 없다는 점이 한계

〈 사회적 성과 부문 중 지역사회 관련 지표 〉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		
지역 사회	지역 발전	지역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혜기업의 성장 기여도 • 지역 고용 증대 • 주민 소득 증대 • 지역 내 핵심 인력(석박사급 인력, 자격증 취득자 등) 유치율 •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 	
		지역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지방 간 연구격차 	
		기반 조성	지역 내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인증 지원·운영 • 기업지원 서비스 만족도
			지역R&D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R&D 정책 기획 및 지원 • 지역 내 기업 유치율 • 지역 내 창업 기업(업체) 수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5차·6차)를 비교하여 작성

○ 10대 사업유형에 따른 핵심성과 중 ‘5. 지역연구개발 유형’

-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협력 사업, 지역클러스터 육성사업, 특정 지역의 특정기술개발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예시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을 소개
- 과제별 상호 연관성이 적은 Bottom-up 방식의 과제공모가 주를 이루므로, 과제별 목표를 단순 통합한 사업목표 설정은 곤란
- 특정지역의 특정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설정 시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성과 측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표 설정
- 과제별 지원 기간은 짧으나 계속사업 비중이 높으므로 단기·중기·장기 성과를 모두 성과 목표·지표로 설정
- 단기산업기술개발 유형과 유사하게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되, 장기 성과목표는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성과로 설정

〈 설정 예시 〉

	투입	과정	산출	투입 단기성과	과정 중기성과	산출 장기성과
사업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 학생 직원 물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시설공간 인프라 연구/생산 장비 지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활동 참여 연구학습 현장실습 (기업파견) 취업지원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 기술개발 테스트 산학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도 기업파견 연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배출 (취업자) 학술활동 (발표 및 게재)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출원 및 등록 사업화 산학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연계 세미나 기술지도 기술이전 협력기관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박사인력배출 취업률 증가 논문발표/개재 증가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출원/등록 증가 사업화실적증대 산학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파견 증대 기술지도 증대 기술이전 증대 프로그램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양성체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학원성장 취업현황 개선 연구성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특허 증가 논문/특허 인용 증가 기술수출 증가 산학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경쟁력 증가 프로그램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경쟁력증가 기초/응용지식 확산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경쟁력 증가 신기술창출 증가 참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발전 지역경제 발전
사업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지역연구 주체의 역량 향상 고급 연구인력 배출 기술수준 향상 기업의 연구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지역의 경제적 영향 고용유발 기업 경쟁력 향상 등
성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대비 공정률 장기기동율 사업화건수 기업 지원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화 성공률 사업화고용창출/순증 기술수출 건수·장비활용률 현장컨설팅 (맞춤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매출액(내수/수출 합계) 특허성과 우수성(SMART, K-PEG 등) 창업 및 기업유치 지역경제지수/산업생산액 기여도 	

제3절 지역연구개발사업 기준 및 사업 분석

1

지역연구개발사업 기준

□ 지역연구개발사업 기준

- (기준 마련) 예산요구서 등을 기준으로 지역 혁신과 관련된 사업 목적 및 기본방향 설정 여부를 기본요건으로 고려

〈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세부사항 〉

- ◇ (사업목적) 지역 발전 및 혁신, 지역 간 격차 해소,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 포함
- ◇ (법령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기술이전·사업화 및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육성 관련 법령 명시
- ◇ (성과지표)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산학연협력, 지역 클러스터 육성, 특정 지역의 특정 기술 개발 및 관련 연구 기반 구축, 연구성과 확산에 관한 성과지표를 설정

- 지자체 예산 매칭 비중, 지역 경제·산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자체 및 지역 산학연의 참여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요건 및 추가요건을 구체화한 체크리스트를 마련

〈 추가요건 세부사항 〉

- ◇ (회계) 균특회계 R&D사업인지 여부
- ◇ (지자체 매칭 비중) 지방비 비율 20% 이상*
* 균특회계 R&D를 수행하는 주요 부처 사업의 평균 지방비 비율 20.3%를 고려하여 설정
- ◇ (지역 파급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주력산업 및 중점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여도,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성 등
- ◇ (지자체 및 지역 산학연 참여도) 지자체 및 지역의 혁신기관(TP, 연구개발지원단 등)의 사업 기획·관리 참여 여부, 지역 대학·연구기관의 사업 참여도 및 역할 등

- 기본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은 지역R&D사업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업은 추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 판단

2 지역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 지역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지역과학기술관련 주요 5개 부처(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가 수행한 연구개발사업(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기반)
- (분석 사항) 수행부처, 지역별 수행비중, 사업유형 및 성격, 지방비 매칭비중
 - 균특사업, 균특 외 사업 중 사업목적·내용 부합 사업, 그 외 사업(균특 사업, 균특 외 사업 중 사업목적·내용 부합 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 사업들을 도출
- (분석 종합) 총 75개 사업(균특사업 34개, 균특 외 사업 중 사업목적·내용 부합 사업 27개, 그 외 사업 14개)을 도출
 - 균특사업(34개); 과기부 11개, 교육부 4개, 국토부 1개, 산업부 9개, 중기부 9개이며, 지방비 비율(지방비/총연구비) 평균은 20.3%
 - 균특 외 사업(27개); 과기부 8개, 교육부 2개, 산업부 14개, 중기부 3개이며, 지방비 비율 평균은 5.6%
 - 그 외 사업 중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 사업(14개); 과기부 1개, 교육부 1개, 산업부 11개, 중기부 1개이며, 지방비 비율 평균은 37.7%

< 수행 부처별 지역R&D사업(억원, %) >

부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비*	총연구비	지방비 비율 평균
균특 사업 합계	14,192.4	4,160.2	20,444.5	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47.1	338.6	3,441.0	9.8%
교육부	4,113.5	386.6	4,559.9	8.5%
국토교통부	50.0	-	64.4	0.0%
산업통상자원부	4,062.7	2,743.5	7,614.6	36.0%
중소벤처기업부	3,319.1	691.4	4,764.5	14.5%
균특 외 사업 중 사업목적·내용 부합 사업 합계	3,758.8	248.2	4,451.1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66.5	23.5	1,444.8	1.6%
교육부	984.6	-	984.6	0.0%
산업통상자원부	1,289.6	224.7	1,878.5	12.0%
중소벤처기업부	118.1	-	143.3	0.0%
그 외 사업 중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 사업	2,387.7	1,710.7	4,541.2	3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2	21.7	105.4	20.6%
국토교통부	78.7	29.1	138.4	21.0%
산업통상자원부	2,202.3	1,635.3	4,244.0	38.5%
중소벤처기업부	27.5	24.5	53.5	45.8%

* 민간연구비/지방정부/현금 + 현물

○ 사업별 목적·내용 검토 결과

- 사업별 예산설명자료에 기술된 사업별 목적 및 내용 등을 분석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에 적합 여부를 검토
- 과기부의 사업들은 ICT 분야를 제외하면, 특정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를 대상 특정하지 않음
 -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등을 제외하면, 사업 지원 분야가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높지 않음
- 교육부 사업 역시,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음
- 산업부와 중기부는 부처가 지정한 지역 산업 분야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음

〈 균특 사업 목적·내용 및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내용 및 개요
과기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과학기술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전자빔 에너지 4GeV, 전자빔 에미턴스 0.1nm·rad 이내의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저장링 둘레 800m 내외) • 산업체 연계형 미래 핵심 전문인력 양성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공급 안정화 및 수출을 위한 동위원소 생산 전용 원자료를 자력 설계·구축하는 한편, 최신 연구로 핵심기술을 실증하여 연구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판형핵연료 및 허부구동제 어장치 등)
5G기반조선해양스마트통신플랫폼및 융합서비스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전략('19.4. 관계부처합동)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에 5G 적용·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연결 디지털 조선소 구축과 공정·물류·안전 혁신에 필요한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초연결·초저지연·초고속·지능형) 통신 플랫폼과 융합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
중입자가속기구축 지원(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0MeV/u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구축 및 중입자치료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분야)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구축을 통해 난치성 암(두경부암, 폐암, 간암 등 8대암) 치료를 통한 암환자의 생존율 향상 - (연구분야) 입자빔 활용 임상연구 및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개발 - (경제분야) 중입자치료센터 성공적 운영을 통해 부산지역을 동남아 의료 허브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 선도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조성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지역 주력산업(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시개발 핵심자원(데이터·기술·인력)과 인프라(데이터센터·실증장비 등)를 한곳에 집약한 글로벌 수준의 시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심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 지역 주력산업(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을 중심으로 데이터, 컴퓨팅파워 등이 제공되는 시기반 혁신 기술 실증 환경 제공을 위한 시 융합 기본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 (일자리 중심 창업지원) 시를 활용한 지역 주력산업 문제 해결 및 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교육, 컨설팅, 매칭 등 창업 지원 - (인력양성) 시로 인한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광주 시 집적단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재직자 시 인력양성

사업명	사업목적·내용 및 개요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융합 개방형 제조운영체제(MOS)를 개발하여 첨단 제조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산업용 솔루션 국산화 개발 다품종 맞춤 생산 대응을 위해 개방형(Open Source) 제조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특화 제조 응용솔루션을 개발 기업환경에 맞는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토록 지원함으로써, 특정제품에 종속된 산업이 아닌 개방형 구조의 제조 서비스산업 생태계 조성 성장한계에 직면한 지역의 제조 산업을 SW·ICT융합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 경제 新시장 창출과 민간투자 확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 기술 보유기관과 수요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 추진 (대학기술경영 촉진)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및 보유기술 이전·창업 등 사업화 촉진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사업화 유망기술 융합을 통해 R&D 핵심성과에 대한 대형·해외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산학연협력클러스터)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기업의 R&D 역량 강화
공공연구성과기반 BIG 선도모델 (4601-3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 공공연구성과 기반으로 지역의 산학연금 주체들이 참여한 공공기술사업화 컨소시엄 운영 및 창업 법인 설립 지원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기여 (사업내용) 지역혁신을 위한 우수 과제를 발굴(사전기획)하고 ②법인과 협동조합을 구성해 R&D·사업화를 지원하며, ③성과의 Spin-off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클러스터Plus) 지역 산학연금 사업화 주체들이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토대로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테마를 발굴(사전기획단계) (BIG선도모델) 지식클러스터Plus 간 경쟁을 통해 선정된 우수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R&D·사업화를 지원(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형태 (인큐베이팅조직) 지식클러스터Plus 구성원 중 일부가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설립하고, BIG 선도모델 단계에서 창업법인의 성장과 성과목표*달성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성과를 바탕으로 파생창업, 투자유치, 해외사업화 등 R&D Spin-off 추진
중기부	
산학연CollaboR&D (R&D)	<p>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학의 보유자원 인력 기술 장비 등 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지원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을 지원</p>
교육부	
산학연협력고도화 지원(R&D)	<p>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대학의 특성과 여건,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등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 협력 선도모델 창출 확산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p>
전문대학혁신지원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협약형) 전체 자율개선대학 대상(87개교)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 기반 구축 지원 (역량강화형) 역량강화대학 중 10개교를 권역별로 선정,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후진학 선도형) 자율개선대학 중 25개교를 권역별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 및 지역사회-산업계간 연계 강화 지원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산업구조 다변화 등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학사 양성을 추진(12개 분야, 12개교) (마이스터 대학) 전문직업인의 성장경로 속 성장단계별 맞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재직자 등에 단계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5개교 시범운영)
학교기업지원사업 (R&D)	<p>학교 내 부서인 학교기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계적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이 재 투자되는 선순환 체제 구축</p> <p>2)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

〈 균특 외 사업 중 사업목적·내용 부합 사업 목적·내용 〉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과기부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지원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전문직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며 미취업·경력단절·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의 자발적·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 잠재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등 과학서비스업 전문화 및 고도화 • (지역공동체혁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심으로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협동조합 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 : 수요발굴부터 해결 방향 기획,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까지 전주기 리빙랩 활용 및 후속적용 연계(지자체 지원, 도시재생 사업 등)를 통해 지역 주민 등 국민공감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과 연구자가 함께 문제정의부터 문제해결까지 참여, 과학기술 활용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 (도시재생 연계 리빙랩)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구자와 수요자가 사업 전 주기에 참여, 기존 R&D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 * 주요 추진 절차(안) : 현안 선정(1분기) → 사전기획(2분기) → 기술개발·적용(2~3년) - (종합지원 허브구축)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사회문제해결 R&D 수요 발굴 및 DB(전문가·연구 현황) 구축 등 허브 역할 수행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국내 기초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본원 및 캠퍼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특성화대학 내(KAIST 연합, POSTECH, UNIST, DGIST, GIST) 건립 • (중이온가속기 구축) 희귀동위원소 기반 세계최고 수준*의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통해 기초과학의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및 가속기활용 우수연구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동위원소 생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ISOL(표적 쪼개짐에 의한 희귀동위원소 생성) 방식과 IF(빔 쪼개짐에 의한 희귀동위원소 생성) 방식을 융합한 중이온가속기 구축 • (기능지구 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혁신역량 강화 및 사업화 환경조성을 위해, 산학연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 성과확산사업 등 지원 • (과학벨트 기획·관리) 과학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총괄운영 지원(사업관리분야) 및 정책개발·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 추진(기획연구과제)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 기술개발(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연구자간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초미세먼지 특성, 기상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초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연구 등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개발
방사선기술사업화 지원사업(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 기술기반 혁신체계 구축) 대형연구시설이 집적된 권역(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통한 방사선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 • (방사선 신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 방사선기술이 의료, 소재, 환경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연계 R&D 및 실용화 프로그램(가치평가, 수출지원 등) 지원 • (방사선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방사선 및 비파괴검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적합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지원 • (비파괴 검사기술 기반연구) 비파괴검사 통합정보센터 고도화, 디지털영상 기반 비파괴검사 영상검사기술 (PAUT, CR, DR 등) 표준화 등 비파괴검사 기반연구 지원
방사성동위원소산업육성 및 고도화기술 지원사업(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활용·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증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시장수요 충족 및 국내 관련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가속기 기반 동위원소 생산체계 고도화, 사업화 추진 - 동위원소 생산시설·장비가 집적된 지역 중심으로 국가투자 대형시설의 효율적인 생산·수급 체계 구축을 통한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수요 맞춤형 동위원소 생산 집적화 및 시설 고도화) 신속한 시장수요 대응이 가능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협력 연구가 가능한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집적화 및 시설고도화 추진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산업 기술력 증진 국제화 지원체계) 동위원소 생산기술 자립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생산·산업 기술력 향상 및 사업화 추진 • (방사성동위원소 자금 및 이용 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국내 동위원소 전주기(생산·제조·판매·운송·폐기·수급량 관리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산업 통합지원 체계 마련 지원
범부처사회문제 해결기반구축 사업(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사회문제해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제2차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이행 및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연구 수행 - 지자체 주도 지역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지원
집단연구지원 (R&D)	(지역혁신 분야(RLRC))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속가능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
교육부	
4단계두뇌한국 21사업(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기초·핵심 학문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연구역량 제고, 학문후속세대 양성 -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원 교육 내실화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지원 • 글로벌박사양성사업 - 국내 우수 박사과정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업 몰입도를 제고하여 세계 수준의 우수 국내박사 양성 - 우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자까지 학문후속세대에게 국내·외 대학 등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역량 강화 지원 • (대학연구기반구축)대학부설연구소및핵심연구지원센터를중심으로대학의기초연구거점구축, 우수한박사급연구 인력의안정적소속제공 • (학문균형발전지원)지역대학·보호분야및비전임교원등상대적으로지원이적은연구분야·연구자에게연구지원을 통한연구자, 학문분야, 지역간균형있는연구발전유도
산업부	
공공에너지선도 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사업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전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기업 인프라와 Test-bed를 활용한 구매 연계형 R&D 추진 - (융합플래그십) 공기업의 에너지전환 투자계획과 보유한 인프라를 연계한 시스템 통합, 융복합형 대형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민간투자 촉진의 토대 마련 * 공기업간의 공동 협업 기술개발 - (산업생태계 육성) 부품소재, O&M 부품 등 공기업이 End-User이거나 Test-bed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টে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구매연계형 사업 * 중소기업(개발)과 공기업(용) 역할분담 협업 기술개발 - (지역에너지 혁신) 에너지 공기업 지방이전과 융복합단지 지정 등으로 집적화된 지역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공기업 + 지자체 + 지역 중소기업 협업 기술개발
무인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자율주행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 무인·자율주행 기술의언택트서비스적용기술개발및기술실증을통한언택트비즈니스선점 - '21년부터 기존 자율셔틀을 일반도로주행용으로 개선, 이에 기반한 무인자율주행 2개차종개발및'21년부터개발하여최종적으로는2개지역에순차도입 - 언택트스토어자율주행실용화개발 * 시간별로 영업장소를 자동 이동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운영 스토어 실용화 기술과 전력문제해결을 위한 연료전지 기반차량용 보조냉각장치 기술개발 - 자율주행셔틀 디지털 헬스케어 핵심기술 및 서비스 개발 * 탑승자 영상·생체신호를 활용한 진단 디바이스와 원격 헬스케어 기술 (열감지, 원격화상 기반의료 상담 등)을 개발,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자율주행 셔틀전용 캐빈설계/개발 및 실증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셔틀 실용화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도로 주행을 위한 자기인증, 운행허가를 취득하여 자율주행 언택트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 - 언택트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실용화 기술 실증 및 항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택트 서비스 실증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 항균 기술 개발
미래차디지털 융합산업실증 플랫폼구축 (R&D)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 전 차종(소형승용 ~ 버스 등 상용차)에 고도화된 자율주행 디지털 융합 핵심부품을 탑재하여 기존 전용도로를 벗어나 일반 시내도로(대구) 운행 실증 지원
빅데이터기반 자동차전장 부품신뢰성 기술고도화 (R&D)	<p>(기반조성) 자동차 전장부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통한 제품 개발 전주기 신뢰성 기술 적용으로 전장부품 산업 기술 고도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장산업 신뢰성 DB 구축 및 산업계 참여형 공동 실험실 운영으로 산업 공통 문제 해결, 신규 기업 진출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장산업 협의체 운영 : 완성차, 부품사 등 전방위 참여 산업계 공동 문제 도출 및 협력 * 공동실험실 운영 : 산업계 참여 공동실험실 운영을 통한 공통 문제 해결 및 신뢰성 DB 구축 * 신뢰성 DB 구축 : 산업계 보유 data 및 실차 기반 취득 data, 시험/분석 data 수집 및 활용 • 장비구축 : 전장산업 빅데이터 서버 및 평가/분석 장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서버 : 전장산업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을 위한 서버 구축 * 평가/분석 장비 : 전장 기업 지원을 위한 구조/소재 분석장비, 실증장비, 평가장비 구축 • 기업지원 : 플랫폼 활용 산업계 기술/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 빅데이터 활용, 전장부품 개발/성능개선, 설계가이드, 규격/표준 선정 지원 등 * 사업화지원 : 자동차 산업 Tier DB 및 협의체 네트워킹 활용 사업화 지원 등 <p>- (기술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융합형 전장부품 기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및 상생형 전장부품 등 10개 과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차 전장부품 : 편의, 안전, 정보(보안), 인터페이스 부품 등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 상생형 전장부품 : 자동차 산업 대기업-중소/중견 기업 간 상생협력이 가능한 품목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핵심 부품개발(R&D)	(기반구축 및 상용화 지원) 동 내역사업은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지원을 통해 내연기관에서 미래자동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원하는 사업
산업위기지역 미래형전기차 부품개발(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의 소량생산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단계 구축 및 부품 기술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소형 전기차 주행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부품기술개발, 전기차 시험장비 운용을 위한 장비구축, 평가법 개발 등
소재부품산업 거점기관지원 (R&D)	<p>(항공산업기반구축) 소형기, 무인기 등 국내개발 항공기의 비행시험 평가를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강관산업육성을위한통합지원시스템구축) 고품질 강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시험평가 및 생산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지원 • (경석자원을활용한세라믹원료산업기반조성) 경석자원을 세라믹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상용화 기반조성과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 • (미래신성장동력CO2고부가가치사업화플랫폼구축) CO2자원화를 위한 전환기술 및 활용제품의 시험·인증을 통한 CO2 전환·활용산업 활성화로 신산업 창출
수상형태양광 종합 평가센터구축 (R&D)	<p>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지역경제(전북 군산) 활성화를 위해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품질 평가를 위한 평가센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 구축) 국내 최초 수상형 태양광 단위 제품 및 시스템의 체계적인 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보급촉진 및 고품질 제품 개발 기반 마련 • (수상형 태양광 실증단지 조성) 수상형 태양광의 시스템 설치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실증 및 플랫폼 조성을 통한 설치·유지관리·폐기 등의 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에너지인력양성 (R&D)	<p>(교육훈련)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지역별 기술인력 불균형 해소와 미래에너지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기업연계 R&D 훈련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계) 해외선진기술 습득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 인력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고급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과 수출국 공무원 대상 국내 학위과정 연계 지원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반) 인력수급전망 및 실태조사 등 통계자료에 기반한 인력 공+D37백분야 파악 및 인력양성 전략 수립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기반 강화 지원 • (NET-ZERO전문인력양성) NET-ZERO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 온실가스, 자원순환 등 친환경 기술 분야의 고급인력 공급체계 구축 지원
자동차산업기술 개발(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내연기관 등 이산화탄소배출 절감,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스마트카) 기존 기계 중심의 자동차에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한 차량 핵심기술 개발 지원 - (대형 버스용 자율주행 부품 시스템 개발 및 수소 자율버스 시범 운행) 수소전기 버스 기반의 자율주행 상용차 부품 및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특정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통한 실증 -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초연결 자율차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자율주행차 AI 구동에 필요한 컴퓨팅 모듈과 인지·통신·판단 솔루션 모듈 확보 및 실증 -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상용차 산업경쟁력 회복과 시장창출을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과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기업 육성 - (수소전기트램 실증) 수소전기트램용 양산형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 및 실차 검증 지원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 에너지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R&D)	<p>(7대 산업기계 재제조 기술개발) 산단 등 제조업계에서 범용성이 높은 노후 산업기계의 재제조를 통한 에너지·자원 절감 및 생산력 향상, 해외시장 개척으로 지역의 침체된 제조업 활력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계재제조기반조성)재제조된 산업기계의 보급·환산을 위한 신뢰도 구축 기반조성, 재제조품 성능평가 및 품질인증기준 제정 수행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R&D)	<p>지역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유망 중견기업에 R&D 등 패키지 지원</p>
철강산업재도약 기술개발(R&D)	<p>철강 산업 생태계 견고화를 위해 중소 철강사 중심의 고부가 철강기술,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거점의 산업공유자산을 구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 금속 분말기반 소재·특수 목적용 강재 등 다품종맞춤형 기술 및 고망간강 등 대기업 생산 고특성 소재에 대한 가공기술 지원 ②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 철강부산물 재활용 기술을 통한 폐자원의 철강원료 등으로의 자원 순환 및 부산물 활용 산업간 연계 제품화 기술 개발 ③ 산업공유자산 : 실증지원 장비 구축, 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수요산업 연계 협의체 구축 등
청정제조기반 구축(R&D)	<p>(내역1)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중소기업 공정내 폐기물·에너지 절감 등 청정공정 기술 도입을 위한 공정진단 및 저비용고효율의 청정생산 기술개발 - 청정공정 기술도입을 위한 공정진단, 적정기술개발지원, 개선활동은 지방비, 기업자부담을 통해 실시 →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가 확보된 지역 기업을 우선 지원 ('20년 7개 지자체 참여)
중기부	
제조데이터공동 활용플랫폼기술 개발(R&D)	<p>중소 제조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 공동 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p>
중소기업R&D 역량제고(R&D)	<p>(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위기지역 /위기업종 및 산업 침체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등 기술혁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p>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p>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p>

〈 그 외 사업 중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 사업 목적·내용 〉

사업명	사업목적·내용 및 개요
과기부	
해외우수기관유치(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센터 설립·운영) 글로벌 핵심기술 확보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센터 설립·운영 지원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 해외기관 우수인력의 지속 유입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해외기관 국내법인 설립·운영 지원 • (우수연구성과지원) 정부지원이 종료되는 우수 공동연구센터의 기술성숙도 제고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
국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 제고 • (목표) 데이터 허브를 통한 데이터연계율 90%달성, 스마트시티 서비스만족도 80%달성, 기술경쟁력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5건 이상
산업부	
국방 섬유소재 산업육성사업(R&D)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고도화를 위해 전투복, 위장막 등 고성능 국방섬유 소재·제품 개발 및 실증평가 기반구축 지원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기술개발(R&D)	<p>(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튜닝부품업체의 기술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 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 부품 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산업혁신기반구축(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혁신기반구축)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전주기적(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기업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장비 구축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기업이 적은 예산으로 첨단 연구장비와 고급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연구기반의 활용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40여개 연구기반센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혁신거점을 지정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통해 장비+기술지원+교육 등 패키지형 기업 지원 추진
수소서비스용 충전소실증사업(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서비스용 충전소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국내외적으로 수소서비스용 충전기술은 시작 단계로,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하여 한국형 수소충전소 표준을 확립 - (사업내용) 한국형 수소서비스용충전소 표준 모델 확립 및 설비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설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
안전산업경쟁력 강화(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술상용화플랫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시험인증 등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재난분야 안전산업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센서 기반 신뢰성 평가장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적용하여, 기술고도화와 검인증체계 구축 및 R&D 연계 지원 • 안전기술상용화연계형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산업 분야 시장수요 및 재난안전 사회문제에 적시 대응을 위한 안전산업 기술상용화플랫폼과 연계한 안전기술상용화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기술이 접목된 안전제품 중 상용화 시급성, 안전기술상용화 플랫폼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상용화 R&D 지원

사업명	사업목적·내용 및 개요
이차전지소재 부품시험평가 센터구축(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EV·ESS 이차전지 소재부품 국산화 및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석·평가 기반 구축, 이차전지 소재·부품 수요-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혁신 체계 활성화 • (사업 내용)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0Ah급(전기차, ESS) 중대형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과 기타 부품소재에 대한 분석·평가 인프라 구축 ② Pilot 전지 제조라인을 통한 셀 완성품에 대한 소재·부품의 전기화학 특성 및 구조분석 인프라 구축 <p>* 이차전지 소재·부품 분석평가 → Pilot 셀 제조 → Pilot 셀 평가 → 피드백의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p>
자동차산업미래 기술혁신을 위한 오픈플랫폼 생태계 구축(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을 위한 오픈플랫폼 생태계 구축)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AI·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도록 표준적합성·연계성·확장성 등이 보장된 미래차 산업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및 새로운 에너지&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산업/개인/환경/가상 데이터 축적, 주행 상황별 가상 데이터 생성, 참여기관 수요기반 서비스 실증, 제품/서비스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법·제도 정비 등 포함
전기차통합 유지보수기반 구축(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수용성 및 관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을 지원 - (전기차 고장DB 및 고장분석 실증기반 구축) 동 사업은 전기차 사용자의 수용성, 관리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실사용 환경에서의 실증 및 분석용 장비 구축을 통하여 전기차 고장 및 이상증상 등의 데이터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장DB를 구축하는 사업
친환경선박용 극저온단열 시스템 실증기반구축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단열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로 LNG선박 건조비용을 절감하고 기술력을 높여 세계 우위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조선 산업 주도권 유지 -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성능 시험평가 실증 센터 및 장비구축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과 대중교통 등 기타 이동 서비스를 연결하여 사용자의 이동 상황(출퇴근, 여행, 마트 등)에 최적화된 신개념 이동 경험 제공을 위해, ① PM 공용 플랫폼 개발, ② 新 이동 서비스 개발, ③실증 사업 수행 및 실증 데이터 분석 기반, ④ 新 이동서비스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지원
항공부품설비·공정 개선지원사업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 생산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관련기업 지원
중기부	
제조기술융합 센터테스트베드 (R&D)	<p>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 및 운영하고 주력산업 제조공정에 대한 제조기술융합분석 서비스 제공</p>

○ 지역별 분석 결과

- 균특사업의 경우, 대전광역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가 가장 크며, 지방비는 경남의 규모가 가장 큼
 - 지방비 비율(지방비/총연구비)은 강원, 경북, 충북 등이 높음

〈 지역별 균특사업(억원, %) 〉

부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비	총연구비	지방비 비율 평균
지방	10,673.2	4,054.4	16,433.1	24.7%
강원도	519.3	364.1	982.1	37.1%
경상남도	979.2	523.4	1,663.3	31.5%
경상북도	823.4	553.6	1,518.0	36.5%
광주광역시	928.4	262.5	1,353.4	19.4%
대구광역시	812.5	163.6	1,100.3	14.9%
대전광역시	2,134.4	449.0	2,793.2	16.1%
부산광역시	759.8	293.4	1,207.8	24.3%
세종특별자치시	212.9	50.2	301.5	16.6%
울산광역시	508.3	206.2	813.6	25.3%
전라남도	541.9	185.6	848.4	21.9%
전라북도	702.4	195.3	1,013.0	19.3%
제주특별자치도	391.6	142.2	600.4	23.7%
충청남도	694.2	305.7	1,133.9	27.0%
충청북도	664.9	359.6	1,104.1	32.6%
지방 외	3,519.1	105.8	4,011.4	2.6%
경기도	747.2	48.9	906.3	5.4%
기타	132.7	9.6	204.9	4.7%
서울특별시	2,459.6	25.8	2,653.7	1.0%
인천광역시	179.7	21.4	246.4	8.7%
해외				
합계	14,192.4	4,160.2	20,444.5	20.3%

- 균특 외 사업의 경우, 대전광역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가 가장 크며, 지방비는 충남의 규모가 가장 큼

- 지방비 비율(지방비/총연구비)은 전북, 충남, 강원 등이 높음

〈 지역별 균특 외 사업 중 사업목적·내용 부합 사업(억원, %) 〉

부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비	총연구비	지방비 비율 평균
지방	3,057.1	218.8	3,553.0	6.2%
강원도	116.9	16.3	138.4	11.8%
경상남도	204.5	15.7	270.9	5.8%
경상북도	212.1	18.2	270.2	6.7%
광주광역시	165.5	2.7	187.3	1.4%
대구광역시	163.8	2.0	177.2	1.1%
대전광역시	1,032.4	-	1,054.0	0.0%
부산광역시	176.5	2.3	193.9	1.2%
세종특별자치시	67.4	0.6	74.9	0.8%
울산광역시	105.5	10.7	136.9	7.8%
전라남도	59.5	5.2	83.0	6.3%
전라북도	268.0	64.2	354.1	18.1%
제주특별자치도	15.4	-	18.3	0.0%
충청남도	346.3	79.7	452.9	17.6%
충청북도	123.5	1.2	140.8	0.9%
지방 외	701.6	29.4	898.2	3.3%
경기도	85.0	0.6	106.6	0.6%
기타	250.5	28.8	338.7	8.5%
서울특별시	334.2	-	412.1	0.0%
인천광역시	16.6	-	21.0	0.0%
해외	15.3	-	19.8	0.0%
합계	3,758.8	248.2	4,451.1	5.6%

- 그 외 사업 중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 사업의 경우, · 충남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가 가장 크며, 지방비는 광주외의 규모가 가장 큼
- 지방비 비율(지방비/총연구비)은 광주, 대전, 경남, 전남 등이 높음

〈 지역별 그 외 사업 중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 사업(억원, %) 〉

부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비	총연구비	지방비 비율 평균
지방	1,730.3	1,548.4	3,543.4	43.7%
강원도	23.3	20.0	46.2	43.3%
경상남도	151.1	167.5	371.8	45.0%
경상북도	123.2	93.3	219.7	42.5%
광주광역시	210.2	368.3	604.7	60.9%
대구광역시	192.4	135.6	371.0	36.6%
대전광역시	95.9	86.6	186.0	46.5%
부산광역시	144.4	136.8	306.8	44.6%
세종특별자치시	5.6	2.0	9.8	20.5%
울산광역시	8.6	2.0	10.6	18.8%
전라남도	149.8	141.7	315.4	44.9%
전라북도	36.1	21.8	58.2	37.5%
제주특별자치도	19.3	2.0	25.8	7.8%
충청남도	506.5	353.4	918.6	38.5%
충청북도	64.0	17.4	98.9	17.6%
지방 외	657.4	162.3	997.8	16.3%
경기도	239.6	49.3	352.3	14.0%
기타	64.3	25.4	95.2	26.6%
서울특별시	297.5	85.7	470.4	18.2%
인천광역시	55.9	2.0	79.8	2.5%
해외				
합계	2,387.7	1,710.7	4,541.2	37.7%

○ 사업 유형 및 성격

- 사업 목적 및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화/성과확산, 연구개발, 인력양성, 장비/기반구축, 국제협력 분야로 구분
- 균특 사업 중 사업화/성과확산 분야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가 가장 크며, 인력양성, 장비/기반구축 순
 - 연구개발 분야의 규모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장비/기분 구축 분야는 지방비 비율이 47.9%로 매우 높음
- 균특 외 사업 중 사업목적·내용 부합 사업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비율이 높음
 - 장비/기반 구축 분야의 지방비 비율이 높음
-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인 사업은 대부분이 장비/기반구축 사업으로 지방비 비율은 38.0%

〈 사업 유형 및 성격별 규모(억원, %) 〉

부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비*	총연구비	지방비 비율 평균
균특 사업 합계	14,192.4	4,160.2	20,444.5	20.3%
사업화/성과확산	6,462.0	725.7	8,657.1	8.4%
연구개발	611.8	159.8	958.3	16.7%
인력양성	3,917.0	379.9	4,342.5	8.7%
장비/기반구축	2,717.2	2,858.4	5,965.5	47.9%
기타(기평비)	484.4	36.5	521.1	7.0%
균특 외 사업 중 사업목적·내용 부합 사업 합계	3,758.8	248.2	4,451.1	5.6%
사업화/성과확산	601.1	94.0	811.7	11.6%
연구개발	1,512.3	65.1	1,696.9	3.8%
인력양성	1,359.2	-	1,545.5	0.0%
장비/기반구축	236.9	89.1	347.7	25.6%
기타(기평비)	49.3	-	49.3	0.0%
그 외 사업 중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 사업 합계	2,387.7	1,710.7	4,541.2	37.7%
사업화/성과확산	96.0	117.0	227.7	51.4%
연구개발	102.0	53.1	191.8	27.7%
인력양성				
장비/기반구축	2,125.6	1,540.6	4,057.7	38.0%
기타(기평비)	64.1	-	64.1	0.0%

제4절 지역연구개발사업 설정 체크리스트 및 성과지표(안)

1 지역연구개발사업 설정 체크리스트

○ 문헌고찰 및 사업 분석을 통해 지역연구개발사업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분류	세부기준 및 체크리스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별 특화된 성장·발전 등 지역 혁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별 특화된 성장·발전 등 지역 혁신에 대한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이 지역 산업,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및 파급력은? 사업이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시설·장비, 인력 등) 확충 및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산학연, 혁신기관이 사업 기획에 참여하였는지? 참여하였다면 역할 및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지? 부담하고 있다면 그 비중은? 여러 지역을 지원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지원내용이 차별화되어 있는지?
수행 및 지원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이 수도권 외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우대사항 및 할당 등이 있는지? 지역 내 산학연이 사업 수행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주관기관, 협조·참여기관 등) 과제가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되어 수행되는지? 지역 주도로 지원하는 기술 및 산업 분야를 선정했는지? 지역의 혁신기관(TP, 연구개발지원단, 지역사업평가단 등)이 실제 사업을 관리, 집행하고 있는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지역과학기술정책(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등)의 목표 및 방향과 부합하는지? 지역(시·도, 시·군·구 등) 간 연계·협력에 기여하는지?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 혁신을 위한 회계·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2 지역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지표(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5대 분야(과학, 기술, 경제, 인프라, 사회)별로 지역R&D사업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특히 사회적 성과 분야를 강화
- 성과평가 시 지역R&D사업 간 상대평가 수행이 필요하며, R&D, 인력양성, 인프라, 성과확산 및 사업화 등으로 사업군별 세분화된 평가를 추진하며 특수성 고려 필요

〈 지역R&D사업을 위한 과학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안) 〉

중분류		소분류		비고	성격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논문	논문 (SCI 급, KCI급 (다른가중치))	집단논문의 우수성	• (지역거점연구)기관별 우수논문 생산 지수★	기존 세분화	
			• (지역거점연구)기관별 지식확산 지수★	기존 세분화	효율성
			• (지역거점연구)기관별 영향력 지수★	기존 세분화	
		공동연구실적	• 지역혁신주체간 공동논문 비율	신규	상호성
			• 초광역지역혁신주체간 공동논문 비율	신규	
		논문 성과확산 (복합지표)	•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사율★	기존	
• 논문 건수 대비 지역내 기술이전 실사율★	기존 세분화		효율성· 상호성		
		• 논문 건수 대비 초광역지역내 기술이전 실사율★	기존 세분화	효율성· 상호성	

〈 지역R&D사업을 위한 기술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안) 〉

중분류		소분류		비고	성격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지식 재산	특허	특허성과확산 (복합지표)	•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실사율★	지식 재산	
			• 특허등록건수 대비 지역내 기술이전 실사율★	기존 세분화	효율성· 상호성
			• 특허등록건수 대비 초광역지역내 기술이전 실사율★	기존 세분화	효율성· 상호성
		공동특허실적	• 지역혁신주체간 공동등록특허 비율	신규	
• 초광역지역혁신주체간 공동등록특허 비율	신규				
비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기존	
			• 국내최고수준 대비 기술 수준(%)★	신규	효율성
			• 국내평균수준 대비 기술 수준(%)★	신규	
성장 동력 창출	제품개발	제품화 단계	• 시장 판매 개시(상품 출시)	기존	
			• 지역내 판매 개시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초광역지역내 판매 개시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전국 판매 개시	기존 세분화	

〈 지역R&D사업을 위한 경제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안) 〉

중분류		소분류		비고	성격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직접 성과	기술료 (로열티)	지식재산 계약	• 기술료(정액)★	기존	
			• 기술료(정률, 현재가치로 평가)★	기존	
			• 지역내 기술료(정액, 정률)★	기존 세분화	효율성
			• 지역의 기술료(정액, 정률)★	기존 세분화	
			• 초광역지역내 기술료(정액, 정률)★	기존 세분화	효율성

중분류	소분류		비고	성격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 초광역지역의 기술료(정액, 정률)★	기존 세분화			
			• 특허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	기존			
			• 지역내 특허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	기존 세분화			
			• 초광역지역내 특허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	기존 세분화			
		기술지도·자문 계약	• 기술지도·자문료 수입	기존			
			• 지역내 기술지도·자문료 수입	기존 세분화	상호성		
			• 초광역지역내 기술지도·자문료 수입	기존 세분화	상호성		
		양적 성과	• 10억원(1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	기존			
			• 지역내 10억원(1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	기존 세분화	효율성 ·상호성		
			• 초광역지역내 10억원(1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	기존 세분화	효율성 ·상호성		
		간접 성과	기술활용효과	기술활용 기업의 성과 향상	• 매출액 기여★	기존	
					• 지역내 매출액 기여★	기존 세분화	효율성 ·상호성
• 초광역지역내 매출액 기여★	기존 세분화				효율성 ·상호성		
• 원가절감 기여율	기존						
• 지역내 원가절감 기여율	기존 세분화						
• 초광역지역내 원가절감 기여율	기존 세분화						
중소기업 지원	자원 투입			• 기업지원 인력 수(man-hour)	기존		
				• 지역내 기업지원 인력 수(man-hour)	기존 세분화		
				• 초광역지역내 기업지원 인력 수(man-hour)	기존 세분화		
				• 장비지원 규모 및 시간	기존		
				• 지역내 기업 장비지원 규모 및 시간	기존 세분화		
				• 초광역지역내 기업 장비지원 규모 및 시간	기존 세분화		
	지원 효과		• 원가절감 기여 ★	기존			
			• 지역내 기업 원가절감 기여 ★	기존 세분화			
			• 초광역지역내 기업 원가절감 기여 ★	기존 세분화			
			• 영업이익액★	기존			
			• 지역내 기업 영업이익액★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초광역지역내 기업 영업이익액★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부가가치금액★	기존				
		• 지역내 기업 부가가치금액★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초광역지역내 기업 부가가치금액★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매출액 발생 과제 수	기존				
		• 지역내 기업 매출액 발생 과제 수	기존 세분화				

중분류		소분류		비고	성격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 초광역지역내 기업 매출액 발생 과제 수	기존 세분화		
			• 수혜기업의 생존가능성 ★	기존		
			• 지역내 수혜기업의 생존가능성 ★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초광역지역내 수혜기업의 생존가능성 ★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기술 사업화	기술사업화	新서비스/상품	• 매출액/순이익 기여★	기존		
			• 지역내 기업 매출액/순이익 기여★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초광역지역내 기업 매출액/순이익 기여★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인적 자원 고용	일자리창출	창업	• 창업 업체 수	기존		
			• 지역내 창업 업체 수	기존 세분화		
			• 초광역지역내 창업 업체 수	기존 세분화		
			• 10억원(1억원) 당 창업(일자리) 건수	기존		
			• 지역내 10억원(1억원) 당 창업(일자리) 건수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초광역지역내 10억원(1억원) 당 창업(일자리) 건수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	기존		
			• 지역내 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지역내 창업 기업의 신규 지역 인재 고용 규모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초광역지역내 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초광역지역내 창업 기업의 신규 지역 인재 고용 규모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기존 기업의 고용			• 사업으로 인한 추가 고용 규모	기존	
				• 사업으로 인한 지역내 추가 고용 규모	기존 세분화	
				• 사업으로 인한 지역내 추가 지역 인재 고용 규모	기존 세분화	
				• 사업으로 인한 초광역지역내 추가 고용 규모	기존 세분화	
				• 사업으로 인한 초광역지역내 추가 지역 인재 고용 규모	기존 세분화	
				• 사업으로 인한 추가 고용 순증★	기존	
				• 사업으로 인한 지역내 추가 고용 순증★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사업으로 인한 지역내 추가 지역 인재 고용 순증★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사업으로 인한 광역지역내 추가 고용 순증★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사업으로 인한 광역지역내 추가 지역 인재 고용 순증★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지역R&D사업을 위한 사회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안) 〉

중분류		소분류		비고	성격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인적 자원 고용	인력양성	대학 주관 인력양성	• 해당 분야 졸업자 수	기존				
			• 지역중점기술 분야 졸업자 수	기존 세분화				
			• 해당 분야 취업자 수	기존				
			• 지역중점기술 분야 취업자 수	기존 세분화				
			• 지역중점기술 분야 지역내 취업자 수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지역중점기술 분야 초광역지역내 취업자 수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전문 훈련기관	전문 훈련기관	• 교육훈련 수료자 수	기존				
			• 지역중점기술 분야 교육훈련 수료자 수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교육훈련생 중 취업자 수	기존				
			• 지역중점기술 분야 교육훈련생 중 취업자 수	기존 세분화				
			• 지역중점기술 분야 교육훈련생 중 지역내 관련 기관 취업자 수	기존 세분화				
			• 지역중점기술 분야 교육훈련생 중 초광역지역내 관련 기관 취업자 수	기존 세분화				
			• 경력복귀지원 종료 후 수혜자 취업률★	기존				
			• 경력복귀지원 종료 후 수혜자 지역내 관련 기관 취업률★	기존 세분화				
			• 경력복귀지원 종료 후 수혜자 초광역지역내 관련 기관 취업률★	기존 세분화				
			지역 사회	지역발전	지역 성장	• 지역수혜기업의 성장기여도★	기존	
						• 초광역지역수혜기업의 성장기여도★	기존 세분화	
						• 지역 고용 증대★	기존	형평성
• 초광역지역 고용 증대★	기존 세분화	형평성						
• 주민 소득 증대★	기존	형평성						
• 초광역지역 주민 소득 증대★	기존 세분화							
•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	기존	형평성						
• 지역중점기술분야 관련 집적도 증가★	기존 세분화	효율성						
• 지역중점기술분야 관련 특화도 증가★	기존 세분화	효율성						
• 지역중점기술분야 관련 연구개발비 성장률★	기존 세분화	효율성						
지역 혁신	• 수도권-지방 간 연구격차★	기존						
사회적 가치		• 지역문제 해결 서비스(인프라) 만족도★			신규			
공공 복지	정책효과	정책일반	• 정책 활용도★	기존				
			•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의 활용도★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서의 활용도★	기존 세분화	정책효과 지역성			

중분류		소분류		비고	성격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지역 협력	지역 협력	인적 교류	• 지역교류 행사	신규	
			• 우수 국내(지역외) 연구자 유치★	신규	
			• 우수 국내(초광역지역외) 연구자 유치★	신규	
	기반 강화	• 해외 연구기관 유치★	기존	상호성	
		• 국내 연구기관 유치★	신규	상호성	
		• 유치 연구기관의 우수성★	기존		
		• 유치 연구기관의 지역특화산업(기술)과의 연관성	신규	효율성	

〈 지역R&D사업을 위한 인프라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안) 〉

중분류		소분류		비고	성격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시설장비	시설 구축	• 지역중점기술분야와의 연관성★	신규	효율성
			시설장비 운용 및 서비스	• 시설장비 가동률★	기존
		• 시설장비 공동 활용률★		기존	
		• 시설장비 사용 수입료★		기존	
		• 장비활용 기업 수		기존	
		• 장비활용 지역내 기업 수	기존	세분화	상호성, 정책효과 지역성
• 장비활용 초광역지역내 기업 수	기존	세분화	상호성, 정책효과 지역성		

3 활용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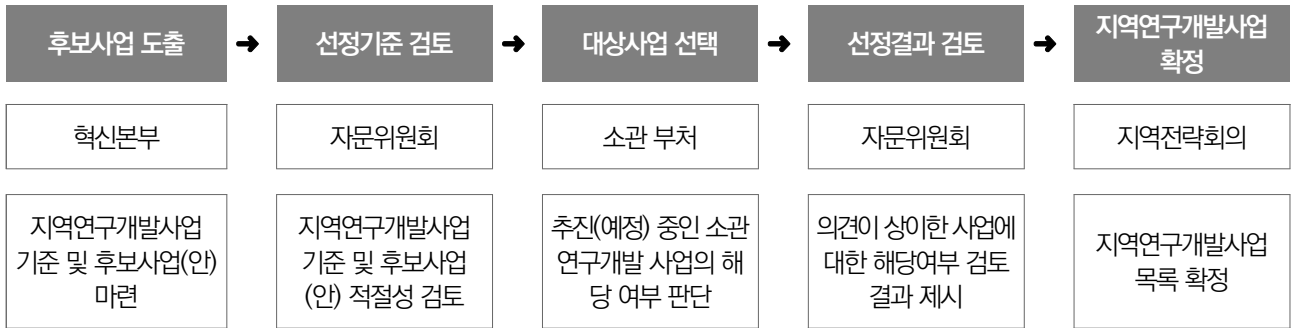
-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방안) 소관부처에서 지역연구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1차 선택하고(예산 요구 시), 혁신본부가 이를 검토하여 확정함으로써 부처별 사업 성격 고려-범부처 차원 사업 관리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제안
- 혁신본부에서 위 체크리스트 및 지역연구개발사업 후보사업(안)을 관계부처에 배포하여 각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지역연구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연구개발사업 판단방안(안) 〉

목적 및 성과지표 해당	→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급효과가 국가 전체에 미치거나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는 비해당
목적 및 성과지표 비해당	→	그 외 기준, 체크리스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 결정

- 대상 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혁신본부의 지역연구개발사업 해당 여부 판단이 상이한 경우, 부처 협의 및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산하 자문위원회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

〈 사업목록 확정 절차(안) 〉



〈 혁신본부-소관부처 의견 반영 기준 〉

		소관 중앙부처	
		해당	미해당
혁신본부	해당	지역연구개발사업 포함	자문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본부-소관부처 협의
	미해당	자문위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여부 결정	지역연구개발사업 미포함

- (심의·평가 활용방안) 체크리스트를 평가지표 및 R&D예산 심의기준 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심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시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예산 심의) 전문위원회 검토 및 예산 편성 시 사업목적, 효과성 등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기준 및 요건에 대한 고려를 강화
 - (평가)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기준 및 요건을 반영하여 사업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평가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제6조에 따라 전략목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자체·특정·상위·종료·추적평가 시 활용

** 국가R&D사업 표준성과지표에 형평성(지역 간 격차 해소), 효율성(지역 잠재 역량 증진), 상호성(지역 내·지역 간 연계·협력 촉진), 정책효과의 지역성, 재정 대응성 등을 반영 추진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상일 외(2023),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KISTEP 최종보고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2), 반도체 및 과학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TEP 정책브리프
- 김성진 외(2022), 2022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KISTEP 최종보고서
- 안준모(2021), 혁신도시 브라이트 랜드를 통해 미래도시를 그리다, 2021 도시미래연구센터 콜로키움
- 일본 문부과학성(2023), 2023년 과학기술·혁신백서(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白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6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참고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국가 과학기술사무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과학기술진흥 관계법령
- 법체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orld.moleg.go.kr/>
-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웹사이트〉 (기준날짜 : 2024.1.30.)

- 현황기반조사 : <https://now.k2base.re.kr/>
- 지역기술 및 혁신 허브(Tech Hubs) 프로그램 출범 : <https://hrstpolicy.re.kr/>
- 지역혁신엔진 : <https://new.nsf.gov/funding/initiatives/regional-innovation-engines>,
- 낙후지역 재경쟁 파일럿 프로그램 : <https://www.eda.gov/funding/programs/recompete-pilot-program>

지역기술허브 : <https://www.whitehouse.gov>, FACT SHEET: Biden-^[WJ]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31 Regional Tech Hubs to Spur American Innovation, Strengthen Manufacturing, and Create Good-Paying Jobs in Every Region of the Country,

재경쟁 파일럿 프로그램 : <https://www.whitehouse.gov>, FACT SHEET: One Year In, President Biden's Inflation Reduction Act is Driving Historic Climate Action and Investing in America to Create Good Paying Jobs and Reduce Costs,

EDA 투자 우선순위 : <https://www.eda.gov/funding/investment-priorities>,

반도체및과학법 등 행정명령 : <https://www.eda.gov/funding/programs/recompete-pilot-program>

일본 후쿠시마 신에너지 가속화플랜 : <https://www.meti.go.jp/>



붙임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및 간담회 자료



붙임 1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국회 발의 본)
------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44
----------	-------

발의연월일 : 2023. 6. 8.

발 의 자 : 김영식 · 권성동 · 박대수
이인선 · 박성중 · 정희용
윤두현 · 김용판 · 金炳旭
홍석준 · 허은아 · 김영주
변재일 · 지성호 · 이상민
김예지 의원(16인)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산업과 일 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렇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 기능, 우수한 연구 인력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은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하며, 여전히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이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의 자생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수행

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역 대학 협력연구단을 지정하는 등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및 지역 기업부설연구소의 공통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실태조사·진단 및 평가·컨설팅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사.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지역 주도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과학기술”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공통의 기술적·산업적·경제적·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2. “지역과학기술혁신”이란 지역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가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에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지역공공연구기관”이란 지역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 나. 제3호에 따른 지역공공연구기관
- 다.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관련 법인·단체
-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

영리법인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 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
5. “지역과학기술인”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 또는 공동의 기술적·산업적·경제적·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을 연계하여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과학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제5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한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혁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지역중점기술”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목표, 자원 확보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 지역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지역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혁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다른 시·도의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등과 중복·충돌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제5항의 기본지침, 제6항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 및 그 밖에 지역혁신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혁신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제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도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시·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

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과 연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하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2. 제12조에 따른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역주도사업,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3. 제24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투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과학기술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투자전략, 예산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 기반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에 관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지역연구사업 및 지역주도사업 추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지역기업연구소 육성 및 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연계·협력 및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전담기관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을 비롯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책연구센터의 지정기준·절차,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이하 “지역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지역연구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역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지역주도사업”이라 한다)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주도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평가, 제4항에 따른 지역주도사업 및 제6항에 따른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 간의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인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고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협약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약의 체결, 내용 및 사업범위, 협약

체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의 육성 등

제15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가운데 지역거점연구기관(이하 “거점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2.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문제의 해결
3.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4. 우수한 지역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5.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개방 및 활용 지원
6.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및 네트워크 운영
7.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구사업 및 지역주도사업 추진 시

거점연구기관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④ 지역공공연구기관은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 기업과 협력연구 및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거점연구기관은 매년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거점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을 위해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등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거점연구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연구기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 원천연구 및 연구인력 양성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점연구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대학에 협력연구단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된 기초 및 원천연구

2.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3.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협력연구단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연구소(이하 “지역기업연구소”라 한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2. 신규 연구개발인력의 확보 및 재직 연구개발인력의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재정 지원
3.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4. 특허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석
5. 그 밖에 지역기업연구소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기업연구소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기업연구소가 직면한 공통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① 시·도지사는 거점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할 시·도 내의 산학연 간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지역 기업 및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2.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연구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
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
6. 그 밖에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의 개방과 협력을 위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이 지역기업의 기술문제 해결과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제19조(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를 활성화하거나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집적단지 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집적단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사항
3.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의 구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산업 및 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집적단지에 입주한 대학·연구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거, 교통,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및 기술 분야가 유사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적단지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 타 집적단지와 중복 여부 및 연계·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 내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의 결과를 해당 집적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
 2.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
 3.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교육의 촉진
 4.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
 6.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연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는 신규 연구개발인력 채용 시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을 우대하여 채용하는 등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으로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①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시·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진흥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 ⑥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5조(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발굴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등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 제11조에 따른 정책연구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